

2023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2023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2023. 9.



2023. 9.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2023. 9.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강성훈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

2023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김 재 진

요 약

1. 연구개요

- 최근 인구구조 고령화와 자산가격의 상승 등으로 상속·증여세제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평가하여 제도의 필요성 및 개선 가능성을 검토함
 - 본 제도는 장기간 운영되었고 감면액 규모가 커 제도의 목적 달성 여부, 필요성,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제도는 1967년 상속·증여세 납부의무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2021년 기준 총공제액은 3,745억원임
 - 2022년 조세지출 항목재분류 결과 처음으로 조세지출로 분류되어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2022)에 포함됨
- 타당성 분석에서는 정부 개입의 근거, 정책대상자의 설정, 지원방식 및 혜택 수준의 적절성, 유사 제도 간 비교 및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함
 - 과세 인프라와 자진신고 현황을 고려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 검토
 - 과세환경 변화에 상응한 공제율 변화 여부, 적정 공제율 수준 검토
 -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 다른 성실신고 유인 제도를 고려한 제도의 타당성 및 개선 가능성 검토
 - 국내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비롯한 주요국의 유사한 제도를 조사하고 시사점 도출
- 효과성 분석에서는 상속·증여세 미시자료와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신고세액공제와 세부담 및 자발적인 신고의 연관성을 살펴봄
 - 신고세액공제는 제도대상자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인데, 효과성 분석에서는 회귀분석 등을 실시해 신고세액공제율과 실효세율 및 무신고율의 관계를 분석함

- 2016년 이후 본 제도의 공제율이 점진적으로 인하되었는데, 이를 활용하여 납세자의 행태변화 가능성 검토
 - 2016년 이전: 10%, 2017년: 7%, 2018년: 5%, 2019년 이후: 3%
- 분석자료는 상속과 증여에 대한 2016~2021년 국세청 결정 미시자료
 -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금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이러한 정보는 결정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함

2. 제도 개요 및 현황

가. 도입목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는 납부의무자가 일정기한 내에 상속·증여세를 신고할 경우 신고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납부의무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정책대상

- 상속·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 신고서에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¹⁾이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1) 이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6개월 이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함

다. 수혜내용

- 상속·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3%를 공제함

라. 제도 연혁

- 1967년 11월 29일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 10%의 상속세 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 도입)
 - 1996년 12월 30일 「상속세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면개정되면서 신고세액공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징수 유예받은 금액 및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 이후 제도에 큰 변화 없이 신고세액공제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됨
 - ① 2016년 이전: 10%
 - ② 2017년: 7%
 - ③ 2018년: 5%
 - ④ 2019년 이후: 3%

마. 조세지출 규모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의 규모는 2021년 3,745억원이며, 2022년과 2023년에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상속·증여세의 결정세액 대비 신고세액공제 비중은 2021년 기준 2.7%임

2) 「상속세법」 제20조의2

바. 해외사례

- 조사 결과 우리나라와 같이 상속·증여세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운영하는 나라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많은 국가에서 미신고 및 납부지연에 대하여 가산세 제도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됨

3. 타당성 분석

가. 정부 개입의 적절성

- 정부 개입의 정당성은 상속·증여세 신고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인정될 수 있음
 - 본 제도 없이 모든 납세의무자가 상속·증여세를 자발적으로 신고한다면 정부 개입의 필요성은 인정되기 어려움
- 과세 인프라 확충과 과세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며, 이러한 현실은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함
 - 부동산 구입자금 출처조사 등 국세청 상속·증여세 미신고 적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3,748건에 대하여 총 2,546억원의 추정세액이 부과됨
 - 상속·증여세 결정자료에 따르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무신고자 비중은 2021년 결정 기준 각각 8.7%와 14.1%임

나. 유사·중복성 및 지원방식의 적절성

-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신고세액공제와 유사성이 있음
 - 두 제도는 유사한 목적을 갖고 있으나 지원방식은 다름
 - 신고세액공제는 기한 내에 자진신고하면 세금의 일부를 감면함
 -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일부를 산출세액에 가산함

-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등 긍정적인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 가산세 등 부정적인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 혹은 두 방식을 모두 활용하는 것 중에 어떠한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검증할 수 있다면 본 제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임
 - 그러나 인센티브 제공 방식에 따른 차별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도 미미함(Slemrod, 2019)

- 신고세액공제와 불성실가산세의 자진신고 유도 효과를 엄밀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인센티브 제공 방식에 따른 행태변화에 큰 차이가 없고 대다수의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제도와 상관없이 자진신고한다고 가정하면 불성실가산세 제도가 신고세액공제 제도보다 비용-효과적(cost-effective)임
 - 현 제도에서는 과세인프라 확충, 개인의 납세의식 등 신고세액공제와 무관한 이유로 기한 내에 신고하는 납세자들도 세액공제를 받음

다.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

- 현재 상속·증여세 외에 다른 세목에서는 자발신고 유도를 위한 신고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는 2011년 폐지됨
 - 전자신고 세액공제 및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는 전자세정 정착을 위한 제도로 보는 것이 적절
 - 기장세액공제의 경우 기장이라는 행위가 납세순응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측면에서 기한 내에 신고만을 요구하는 신고세액공제와는 구분됨

- 단, 상속·증여세의 경우 다른 세목에 비해 생애주기상 납부 빈도수가 낮고 제도 운영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 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

라.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외국에 비해 높은 상황에서 신고세액공제가 세부

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제도를 폐지하거나 공제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세부담은 이전 재산가액이 높은 구간에서 주요국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

□ 그러나 국가 간 비교를 통한 적정 세부담 논의의 한계에 유의해야 함

- 상속·증여세 외에 다른 제도, 그 외 사회적·경제적 특징 등 개별 국가의 특이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는 바람직하지 않음
 - 국가 간 특징이 적절히 고려되는 경우에도 주요국의 평균이 바람직한 수준이라는 가정에 의존
- 상속·증여세의 세부담 적정성을 평가할 때에는 재분배에 대한 선호, 과세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행태변화, 무상이전 자산의 분포, 다른 세제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Farhi and Werning, 2010; 2013; Piketty and Saez, 2013)

□ 기본적으로 세부담 수준은 세율체계와 인적공제 및 일괄공제 등을 이용해 조정하는 것이 적절

4. 효과성 분석

□ 효과성 분석에서는 기초통계분석과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신고세액공제 축소가 무신고율 및 무신고 Tax Gap 비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봄

- 기초통계분석에서는 신고세액공제 축소와 무신고율 및 무신고 Tax Gap 비율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봄
 - 상속과 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결정자료를 사용하여 무신고율과 무신고 Tax Gap 비율을 산출함
- 상속세를 중심으로 지역별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신고세액공제율의 연도별 외생적 변화를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신고세액공제 축소로 인한 실효세율 증가가 무신고율 및 무신고 Tax Gap 비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

□ 신고세액공제의 세제혜택은 감소하였으나 무신고율과 무신고 Tax Gap 비율은 증가

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함

- 국세청의 상속 결정자료를 살펴보면, 2016~2021년 기간에 신고세액공제로 인한 실효세율 감소율은 하락추세에 있음
 - 동 기간에 신고세액공제율은 10%에서 3%로 단계적으로 하향조정됨
 - 신고세액공제율은 실효세율을 감소시키므로, 신고세액공제율 축소는 실효세율 증가, 즉 신고세액공제로 인한 실효세율 감소율의 감소와 관련이 있음
- 하지만, 동 기간에 무신고율과 무신고 Tax Gap 비율은 감소추세를 보임
- 과세가액별로 살펴보면, 신고세액공제 축소로 실효세율 감소율이 크게 감소한 과세구간에서 무신고율과 무신고 Tax Gap 비율 감소폭 역시 크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확인됨

- 도구변수를 사용한 패널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신고세액공제 축소로 인한 실효세율 증가는 무신고율 증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없음
- 연도별 더미변수 추정치를 살펴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신고율은 감소하고 그 감소폭 역시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음

□ 요약하면, 신고세액공제의 축소는 무신고율과 무신고 Tax Ga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특히, 상속의 경우에는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납세자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정책 여건을 고려해볼 때, 조세회피를 하려는 사람이 신고세액공제로 인해 조세회피를 하지 않게 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기초통계 및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평균적으로 신고세액공제 축소와 조세회피 행위 증가 간의 관계를 확인하지 못함

□ 하지만, 증여의 경우 조세회피 사례가 더 많고 국세청이 모든 증여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과세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 하더라도 모든 증여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음
 - 부동산 및 금융 거래 자료를 활용하여 일부 고액 자산가의 증여는 포착할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일반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10년 기간 5,000만원 이상 증여 등을 모두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통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증여 역시 신고세액공제 축소가 조세회피 행위 증가와 관련 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음
- 따라서 증여의 경우 새로운 비조세정책을 설계하여 조세회피 행위 포착 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예컨대, 빅데이터, 머신러닝 기법 등을 활용하여 과거 조세회피 행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조세회피 행위를 발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임

5. 결론

- 본 제도의 공제율은 2016년 이후 점진적으로 인하되었는데, 이는 과세인프라 확충, 유사·중복성 및 지원방식의 적절성,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추가적인 공제율 인하 혹은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진행 중인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과 그에 따른 세율체계 및 공제금액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음

목 차

I. 서론	15
II. 제도 개요 및 해외사례	19
1. 제도 개요	21
가. 도입목적	21
나. 정책대상	22
다. 수혜내용	23
라. 제도 연혁	27
마. 조세지출 규모	27
2. 해외사례	31
가. 미국	31
나. 일본	32
다. 독일	32
라. 영국	33
III. 타당성 평가	35
1. 정부 개입의 적절성	37
2. 유사·중복성 및 지원방식의 적절성	38
가. 상속·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39
나. 상속·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	44
다. 소결	46
3.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	46
가. 양도소득세 신고세액공제	47
나. 기타 신고 및 납세순응 관련 제도	48
다. 소결	51
4.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51

IV. 효과성 분석	59
1. 이론적 논의	61
2. 분석자료 및 분석결과	67
가. 분석자료	67
나. 기초통계 분석결과	70
다. 회귀분석 결과	85
3. 소결	95
V. 요약 및 시사점	97
참고문헌	101
부록	105

표 목 차

<표 II-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공제)	21
<표 II-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23
<표 II-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23
<표 II-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24
<표 II-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26
<표 II-6> 연도별 상속·증여세 결정세액 및 신고세액공제 규모	28
<표 II-7> 연도별 상속·증여세 결정세액 대비 신고세액공제 비중 추이	30
<표 II-8> OECD 회원국의 상속세 미신고 및 납부지연 관련 제도	33
<표 III-1> 부동산 구입자금 출처조사 등 국세청의 상속·증여세 미신고 적발 통계 ...	37
<표 III-2> 상속·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39
<표 III-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40
<표 III-4>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40
<표 III-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41
<표 III-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42
<표 III-7>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42
<표 III-8> 연도별 상속·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규모	43
<표 III-9>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44
<표 III-10>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45
<표 III-11> 연도별 상속·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 규모	45
<표 III-12> 연도별·자산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와 무신고가산세	47
<표 III-1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48
<표 III-14> 「소득세법」 제56조의3	50
<표 III-15> 「소득세법」 제56조의2	50
<표 IV-1> 무신고 Tax Gap	72
<표 IV-2> 기초통계량	87

<표 IV-3> Pooled 패널자료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90
<표 IV-4> 무신고율에 대한 패널 회귀분석 결과	92
<표 IV-5> 무신고 Tax Gap 비율에 대한 패널 회귀분석 결과	94
<부록 표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107
<부록 표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109
<부록 표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112
<부록 표 4> 가업상속공제 요건	113
<부록 표 5> 영농상속공제 요건	114
<부록 표 6> 기타 인적공제 공제요건 및 공제액	115
<부록 표 7> 금융재산 상속공제 공제요건 및 공제액	115
<부록 표 8> 동거주택 공제요건	116
<부록 표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116
<부록 표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118
<부록 표 11> 증여세 과세표준	119
<부록 표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120
<부록 표 13> 상속세 세액계산흐름도	121
<부록 표 14> 증여세 세액계산흐름도	122
<부록 표 15> 과세표준 구간별 상속세 결정세액 및 신고세액공제 규모	123
<부록 표 16> 과세표준 구간별 상속세 결정세액 대비 신고세액공제 규모	123
<부록 표 17> 과세표준 구간별 증여세 결정세액 및 신고세액공제 규모	124
<부록 표 18> 과세표준 구간별 증여세 결정세액 대비 신고세액공제 비중	125
<부록 표 19> 과세표준 구간별 상속·증여세 결정세액 및 신고세액공제 비중	126
<부록 표 20> 과세표준 구간별 상속·증여세 결정세액 대비 신고세액공제 비중 ..	126

그림 목 차

[그림 II-1] 연도별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세액 규모 추이	29
[그림 II-2] 연도별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규모 추이	29
[그림 II-3] 연도별 상속·증여세 결정세액 대비 신고세액공제 비중 추이	30
[그림 III-1] 부동산 구입자금 출처조사 등 국세청의 상속·증여세 미신고 적발 통계	38
[그림 III-2] 연도별 상속·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규모 추이	43
[그림 III-3] 연도별 상속·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 규모 추이	45
[그림 III-4] OECD 회원국의 총세수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 비교	52
[그림 III-5] OECD 회원국의 총세수 대비 상속세 비중 비교	52
[그림 III-6] 일시적 자산이전에 대한 세부담 비교 1	54
[그림 III-7] 일시적 자산이전에 대한 세부담 비교 2	55
[그림 III-8] 지속적 자산이전에 대한 세부담 비교	57
[그림 IV-1] 결정확률(Decision Weight)	65
[그림 IV-2] 피상속인 수 및 수증자 수	69
[그림 IV-3]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과세가액	69
[그림 IV-4] 상속과 증여에 대한 실효세율	70
[그림 IV-5] 무신고율	71
[그림 IV-6] 무신고 Tax Gap 비율	73
[그림 IV-7] 상속 신고세액공제로 인한 실효세율 감소율 1	75
[그림 IV-8] 상속 신고세액공제로 인한 실효세율 감소율 2	75
[그림 IV-9] 상속 신고세액공제로 인한 2016년 실효세율 감소율과 2021년과 2016년의 실효세율 감소율 차이 간의 상관관계	76
[그림 IV-10] 상속에 대한 무신고율 1	77
[그림 IV-11] 상속에 대한 무신고율 2	77
[그림 IV-12] 상속에 대한 Tax Gap 비율 1	78

[그림 IV-13] 상속에 대한 Tax Gap 비율 2	79
[그림 IV-14] 증여 신고세액공제에 의한 실효세율 감소율 1	80
[그림 IV-15] 증여 신고세액공제에 의한 실효세율 감소율 2	81
[그림 IV-16] 신고세액공제로 인한 2016년 실효세율 감소율과 2021년과 2016년의 실효세율 감소율 차이 간의 상관관계	81
[그림 IV-17] 증여에 대한 무신고율 1	82
[그림 IV-18] 증여에 대한 무신고율 2	83
[그림 IV-19] 증여에 대한 무신고 Tax Gap 비율 1	84
[그림 IV-20] 증여에 대한 무신고 Tax Gap 비율 2	84
[그림 IV-21] 실효세율과 무신고율	89
[부록 그림 1]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112
[부록 그림 2]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117
[부록 그림 3] 과세표준 구간별 상속세 결정세액 대비 신고세액공제 규모 추이 ..	124
[부록 그림 4] 과세표준 구간별 증여세 결정세액 대비 신고세액공제 비중 추이 ..	125
[부록 그림 5] 과세표준 구간별 상속·증여세 결정세액 대비 신고세액공제 규모 추이 ...	127

I. 서론



I. 서론

- 최근 인구구조 고령화와 자산가격의 상승 등으로 상속·증여세제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음
 - 최근 10년간 상속·증여세 수입과 국세 대비 세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상속·증여세의 국세 대비 비중은 2010년 1.7%에서 2020년 3.7%로 증가
 - 『국세통계연보』의 상속세 결정 현황³⁾에 따르면 전체 피상속인 대비 과세대상의 비중은 지난 15년간 증가하는 추세임
 - 상속세 과세대상 비중은 2008년과 2011년에 각각 1%와 2%를 넘어섰으며, 2021년 3.7%임⁴⁾
 - 과세대상 비중의 상승은 자산가격 상승과 상속세 세율체계와 공제제도 유지 등으로 설명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평가하여 제도의 필요성 및 개선 가능성을 검토함
 - 본 제도는 장기간 운영되었고 감면액 규모가 커 제도의 목적 달성 여부, 필요성,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제도는 1967년 상속·증여세 납부의무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2021년 기준 총공제액은 3,745억원임
 - 2022년 조세지출 항목재분류 결과 처음으로 조세지출로 분류되어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2022)에 포함됨

- 타당성 분석에서는 정부 개입의 근거, 정책대상자의 설정, 지원방식 및 혜택 수준의 적절성, 유사 제도 간 비교 및 중복 여부 등을 검토
 - 과세 인프라와 자진신고 현황을 고려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 검토

3) 상속세 결정 연도는 피상속인의 실제 사망 연도와 다를 수 있음(상속세 신고기한은 6개월이며, 법정 결정 기한은 9개월)

4) 2021년 기준 피상속인의 96.3%는 과세 미달

- 과세환경 변화에 상응한 공제율 변화 여부, 적정 공제율 수준 검토
-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 다른 성실신고 유인 제도를 고려한 제도의 타당성 및 개선 가능성 검토
 - 국내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비롯한 주요국의 유사한 제도를 조사하고 시사점 도출

- 효과성 분석에서는 상속·증여세 미시자료와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신고세액공제와 세 부담 및 자발적인 신고의 연관성을 살펴봄
 - 신고세액공제는 제도대상자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인데, 효과성 분석에서는 회귀분석 등을 이용해 신고세액공제율과 실효세율 및 무신고율의 관계를 분석함
 - 2016년 이후 본 제도의 공제율이 점진적으로 인하되었는데, 이를 활용하여 납세자의 행태변화 가능성 검토
 - 2016년 이전: 10%, 2017년: 7%, 2018년: 5%, 2019년 이후: 3%
 - 분석자료는 상속과 증여에 대한 2016~2021년 국세청 결정 미시자료
 -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금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이러한 정보는 결정자료에서 확인 가능

- 이어지는 제II장에서는 동 제도의 개요, 해외사례 등을 살펴보고, 제III장과 제IV장에서는 각각 타당성 분석과 효과성 분석을 수행하며, 제V장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연구를 마무리함

Ⅱ. 제도 개요 및 해외사례



II. 제도 개요 및 해외사례

1. 제도 개요

- 상속·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3%를 공제함
- 본 제도는 2022년 조세지출 항목재분류 결과 처음으로 조세지출로 분류되어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2022)에 포함됨
 - 조세특례 적용기한은 없음

<표 II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공제)

제69조(신고세액공제)

- ①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 ②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5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검색일자: 2023. 1. 25.

가. 도입목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는 납부의무자가 일정기한 내에 상속·증여세를 신고할 경우 신고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납부의무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일차적으로는 납세자에게 협력의무를 부여하여 신고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정부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로 확정함

나. 정책대상

- 상속·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 상속·증여세 납부의무자와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은 부록에서 설명함
 - 신고서에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 (상속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⁵⁾이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증여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제41조의3(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과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함
 -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및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함

5) 이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6개월 이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함

<표 II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검색일자: 2023. 1. 26.

<표 II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검색일자: 2023. 1. 30.

다. 수혜내용

1) 상속세

-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액)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액을 포함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에 포함된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3%⁶⁾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 상속세 산출세액은 부록에서 설명하고 이하에서는 할증과세액과 공제·감면 제도를 설명함

$$\text{신고세액공제액} = \left[\text{산출세액} + \frac{\text{세대 생략}}{\text{할증과세액}} - \text{공제·감면세액등} \right] \times 3\%$$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액⁷⁾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함⁹⁾

<표 II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상속세 세율)에 따른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검색일자: 2023. 2. 22.

□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금액¹⁰⁾

- 상속재산 중 다음의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함

6) 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상속 개시분은 5% 공제하며, 2018년 이전 상속 개시분은 7% 공제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8)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

9) 단,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 제외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

-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문화재자료 및 동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와 동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동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중이거나 보존 중인 재산

□ 증여세액 공제¹¹⁾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¹²⁾

-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前)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 외국 납부세액 공제¹³⁾

-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와 관련해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상속세 산출세액 공제

2) 증여세

-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을 포함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재산에 포함된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증여세 징수유예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3%¹⁴⁾를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

- 증여세 산출세액은 부록에서 설명하고 이하에서는 할증과세액과 공제·감면 제도를 설명함

$$\text{신고세액공제액} = \left[\text{산출세액} + \frac{\text{세대 생략}}{\text{할증과세액}} - \text{공제·감면세액등} \right] \times 3\%$$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14) 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여분은 5% 공제하며, 2018년 이전 증여분은 7% 공제

□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¹⁵⁾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출세액에 30%¹⁶⁾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함¹⁷⁾

<표 II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 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출세액에 100분의 30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할증과세액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검색일자: 2023. 2. 22.

□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금액¹⁸⁾

- 증여재산 중 다음의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의 징수를 유예함
 -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문화재자료 및 동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와 동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동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중이거나 보존 중인 재산

□ 증여세액 공제¹⁹⁾

-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을 공제

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16)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

17) 단,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제외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

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 외국 납부세액 공제²⁰⁾

- 무제한납세의무자가 외국에 소재한 재산을 증여받은 때, 외국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산출세액에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

라. 제도 연혁

□ 1967년 11월 29일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 10%의 상속세 신고 납부세액공제제도 도입²¹⁾

□ 1996년 12월 30일 「상속세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면개정되면서 신고 세액공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 징수 유예받은 금액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 이후 제도에 큰 변화 없이 신고세액공제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됨

- ① 2016년 이전: 10%
- ② 2017년: 7%
- ③ 2018년: 5%
- ④ 2019년 이후: 3%

마. 조세지출 규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결정세액 및 신고세액공제 규모는 다음과 같음

□ 상속·증여세 결정세액 규모는 2015년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간 상속·증여세 결정세액 규모는 연평균 15.2% 증가함
 - 상속세 15.0%, 증여세 15.3%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21) 「상속세법」 제20조의2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규모는 2017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후 공제 규모가 감소함
 -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규모는 등락을 반복하며 증가하여 2017년 2,347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이후 공제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
 -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규모는 상속세와 비슷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2017년 3,45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020년도까지 규모가 감소하다가 2021년에 전년 대비 약 1,000억원 증가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의 규모는 2021년 3,745억원이며, 2022년과 2023년에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표 II -6> 연도별 상속·증여세 결정세액 및 신고세액공제 규모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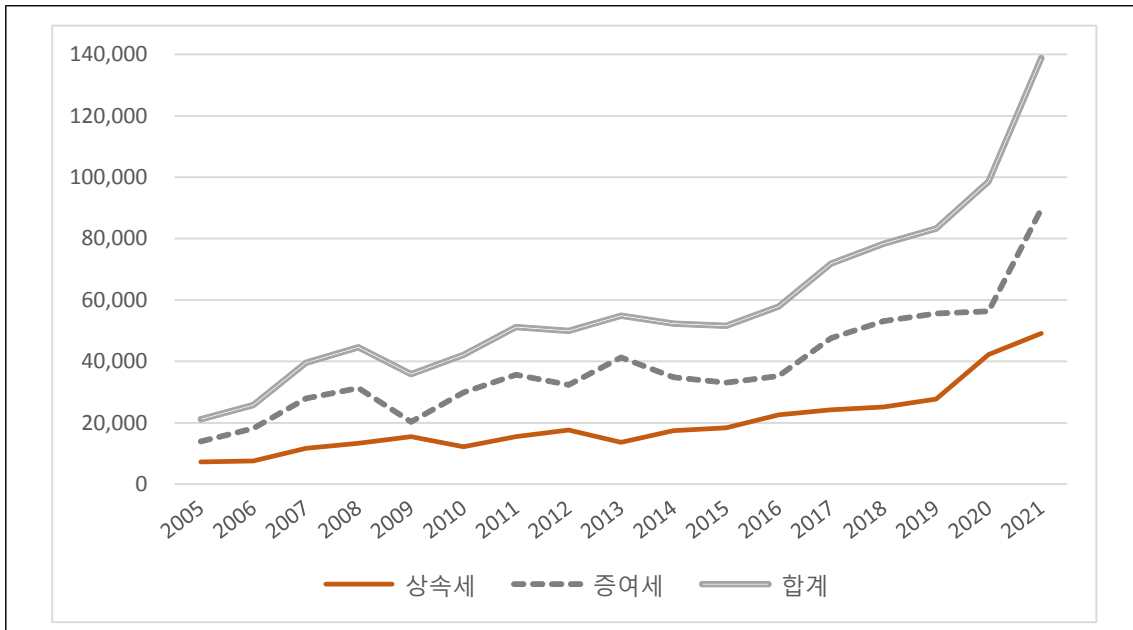
연도	결정세액			신고세액공제 규모		
	상속세	증여세	합계	상속세	증여세	합계
2005	7,256	13,945	21,202	626	1,084	1,711
2006	7,576	18,171	25,747	630	1,298	1,928
2007	11,666	27,946	39,611	1,010	2,249	3,260
2008	13,329	31,310	44,638	1,056	2,342	3,398
2009	15,464	20,367	35,832	1,374	1,483	2,857
2010	12,217	29,936	42,153	1,048	1,866	2,914
2011	15,545	35,667	51,212	1,215	2,278	3,493
2012	17,659	32,348	50,008	1,340	1,674	3,013
2013	13,630	41,296	54,926	1,113	2,230	3,343
2014	17,453	34,880	52,333	1,501	2,438	3,939
2015	18,439	33,135	51,575	1,515	1,981	3,496
2016	22,561	35,282	57,843	2,081	2,254	4,336
2017	24,299	47,595	71,894	2,347	3,452	5,799
2018	25,197	53,176	78,372	1,755	2,786	4,542
2019	27,709	55,620	83,329	1,449	1,941	3,390
2020	42,294	56,326	98,620	1,513	1,494	3,007
2021	49,131	89,715	138,846	1,276	2,469	3,745
2022(전망)	-	-	-	7,384	2,946	10,330
2023(전망)	-	-	-	8,229	3,236	11,465

주: 2005~2021년 결정세액 및 신고세액공제 규모는 『국세통계연보』, 2022~2023년 전망치는 『조세지출 예산서』상의 수치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기획재정부,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2022. 9.)

[그림 II -1] 연도별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세액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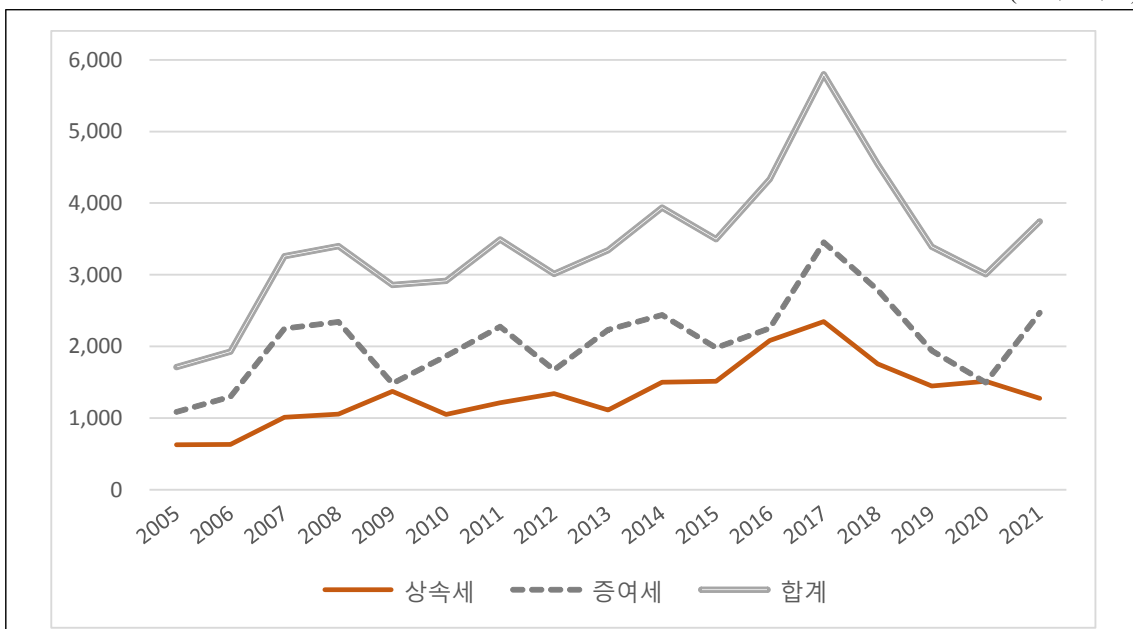
(단위: 억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II -2] 연도별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규모 추이

(단위: 억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결정세액 대비 신고세액공제 비중 추이는 다음과 같음
 - 2021년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결정세액 대비 신고세액공제 규모는 각각 2.6%와 2.8%임
 - 결정세액 대비 신고세액공제 비중은 공제율이 인하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II -7> 연도별 상속·증여세 결정세액 대비 신고세액공제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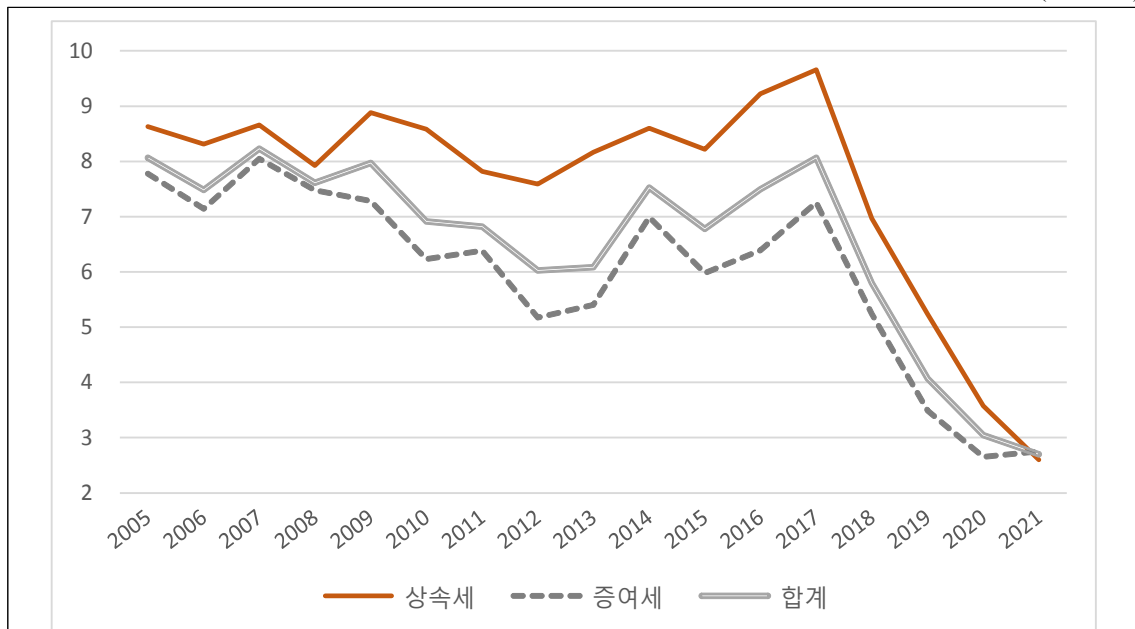
(단위: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상속세	8.6	8.3	8.7	7.9	8.9	8.6	7.8	7.6	8.2
증여세	7.8	7.1	8.0	7.5	7.3	6.2	6.4	5.2	5.4
합계	8.1	7.5	8.2	7.6	8.0	6.9	6.8	6.0	6.1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상속세	8.6	8.2	9.2	9.7	7.0	5.2	3.6	2.6	
증여세	7.0	6.0	6.4	7.3	5.2	3.5	2.7	2.8	
합계	7.5	6.8	7.5	8.1	5.8	4.1	3.0	2.7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 -3] 연도별 상속·증여세 결정세액 대비 신고세액공제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결정세액, 신고세액공제 규모, 결정세액 대비 신고세액공제 규모는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과세표준 구간은 세율이 변화하는 구간과 동일하게 설정함
 -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2. 해외사례

- 조사 결과 우리나라와 같이 상속·증여세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운영하는 나라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많은 국가에서 미신고 및 납부지연에 대하여 가산세 제도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됨

가. 미국

- (무신고) 미국에서는 법정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매월 세금 부과액의 5%가 가산됨²²⁾
 - 무신고 가산세의 한도는 25%로 5개월이 지나도 신고하지 않으면 25% 가산세가 부과됨
 - 무신고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고의적 태만(willful neglect)이 아닌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음
- (납부지연) 부과된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 기 납부 세액 및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에 매월 0.5%의 가산세가 부과됨²³⁾
 - 납부지연 가산세의 한도는 25%
 - 납부지연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고의적 태만(willful neglect)이 아닌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음
- 같은 달에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 가산세가 월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22) IRS, <https://www.irs.gov/payments/failure-to-file-penalty>, 검색일자: 2023. 4. 3.

23) IRS, <https://www.irs.gov/payments/failure-to-pay-penalty>, 검색일자: 2023. 4. 3.

나. 일본

- 일본에서는 법정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됨
 - 취득 시점의 시가를 과세가격으로 하며 상속,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재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됨

- (무신고) 법정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15%가 가산세로 부과됨
 - 50만엔을 초과하는 부분은 20%의 가산세 부과²⁴⁾
 - 무신고에 대해 납세자의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 (납부지연) 부과된 세금을 법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됨²⁵⁾
 - 납부지연이 납세자의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다. 독일²⁶⁾

- (무신고) 독일에서는 법정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정 세액의 10%(최대 2억 5,000유로)의 가산세가 부과됨
 - 일반적인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함

- (납부지연) 부과된 세금을 법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가 완료될 때까지 매월 1% 가산세가 부과됨
 - 5일 이내의 연체분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24) 일본 「국세통칙법」 제67조 제1항

25) 일본 「국세통칙법」 제66조 제2항

26) 김유찬·이유향(2004)을 참고하여 작성

라. 영국

- (무신고) 법정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초기 벌금 100파운드가 부과되며 경과 기간에 따라 추가 벌금이 부과됨
 - 신고 지연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하루당 10파운드가 가산되며, 6개월을 초과하면 300파운드 또는 세금의 5% 중 더 큰 금액이 가산됨
- (납부지연) 납부지연에 대해서 이자를 부과하며, 가산이자율(Interest rates)은 수시로 변경되는 비율에 따라 적용
 - 이자율은 시장이자율(Market rates)에 따라 변동시켜 가산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의 차이를 통한 차익거래를 방지함
 - 2023년 4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상속세 가산이자율은 6.75%²⁷⁾

〈표 II -8〉 OECD 회원국의 상속세 미신고 및 납부지연 관련 제도

국가	내용
벨기에	• 한 달에 25유로 가산
칠레	• 미납 세금의 10% 추가 부과하며, 5개월 이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율 10%에서 매월 최대 2%씩 추가 가산
덴마크	• 세무당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핀란드	• 무신고: 60일 이내 지연에 대해서는 50유로, 60일을 초과한 지연에 대해서는 미납 세금의 10%(최소 75유로)를 가산하여 부과 • 납부지연: 연 7%의 가산세 부과
독일	• 일반적인 세법에 따른 가산세 적용
그리스	• 무신고: 가산세 100유로 • 납부지연: 월 0.71%의 가산세 부과
헝가리	• 납부지연: 중앙은행 기준금리에 5%p를 더한 비율로 가산세 부과
아일랜드	• 제출 기한 이후 2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5%를 가산(최대 12,695유로) • 제출 기한이 2개월을 초과한 경우 10%를 가산(최대 63,485유로) • 세금 지불 연체에 대한 이자가 발생함 •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고정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27) 영국 정부, "Inheritance Tax thresholds and interest rate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ates-and-allowances-inheritance-tax-thresholds-and-interest-rates/inheritance-tax-thresholds-and-interest-rates>, 검색일자: 2023. 4. 11.

<표 II -8>의 계속

국가	내용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신고: 세금 부과액에 따라 120~240% 가산세 부과.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경우 벌금 250~1,000유로 부과 • 납부지연: 최대 30일까지 지연에 대하여 세금 부과액에 따라 60~120% 가산세 부과.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경우 벌금 150~500유로 부과 • 허위 신고: 관련 정보 누락 등 허위신고를 할 경우 세금 부과액에 따라 100~200% 가산세 부과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가 지연되면 신고지연 가산세, 납부가 지연되면 연체 가산세가 부과됨
리투아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가 지연되면 가산세 부과
룩셈부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 주당 25유로 벌금 부과 -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세금 부과액의 10% 가산세 부과 • 납부지연: 체납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세는 사망한 날로부터 8개월 이내, 증여세는 증여 다음 연도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무신고 및 납부지연에 대해 가산세가 발생함
폴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연 신고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되며, 지연 납부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됨
포르투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신고: 벌금 150~3,750유로 부과 • 납부지연: 최소 15~50%, 최고 100~200% 가산세 부과
슬로베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신고에 대한 벌금은 없으며, 납부지연에 대하여 매일 0.0274% 이자 부과
스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지연에 대한 이자 부과
스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지연에 대한 이자 부과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벌금 100파운드 - 3~6개월: 하루당 10파운드 - 6개월 초과: 300파운드 또는 세금의 5% 중 더 큰 금액 • 납부지연: 납부지연 이자 부과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신고: 매월 세금 부과액의 5%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 납부지연: 매월 0.5% 가산세 발생(최대 25%)

자료: OECD 제공자료(2023. 3. 24.)

Ⅲ. 타당성 평가



Ⅲ. 타당성 평가

1. 정부 개입의 적절성

- 정부 개입의 정당성은 상속·증여세 신고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인정될 수 있음
 - 본 제도 없이 모든 납세의무자가 상속·증여세를 자발적으로 신고한다면 정부 개입의 필요성은 인정되기 어려움

- 부동산 구입자금 출처조사 등 국세청 상속·증여세 미신고 적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3,748건에 대하여 총 2,546억원의 추징세액을 부과함
 - 2016~2021년 기간 동안 미신고 적발 건수 및 추징세액의 평균은 각각 2,656건과 3,318억원임
 - 미신고 적발 건수와 추징세액 수준은 납세순응의 정도와 국세청 조사의 효과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표 Ⅲ-1> 부동산 구입자금 출처조사 등 국세청의 상속·증여세 미신고 적발 통계

(단위: 건, 억원)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조사건수	1,793	1,626	2,739	2,523	3,508	3,784
추징세액	4,826	5,135	2,903	2,119	2,363	2,564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그림 Ⅲ-1] 부동산 구입자금 출처조사 등 국세청의 상속·증여세 미신고 적발 통계

(단위: 건, 억원)



자료: 국세청에서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상속·증여세 결정자료에 따르면 상속·증여세 무신고자 비중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한 수준임
 - 상속세 무신고율은 2016년 13.5%에서 2021년 8.7%로 감소
 - 증여세 무신고율은 2016년 24%에서 2021년 14.1%로 감소
 - 무신고율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제Ⅳ장 효과성 분석에서 다룸

- 과세 인프라 확충과 과세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함
 - 정부 개입의 필요성은 궁극적으로 제도의 효과성과 연관되는데, 본 제도가 자발적인 신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제Ⅳ장에서 다룸

2. 유사·중복성 및 지원방식의 적절성

- 본 제도와 유사한 성격의 상속·증여세 관련 제도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들 수 있음

- 공통적으로 상속·증여세의 납세순응도 제고를 목표로 함
- 본 절에서는 유사 제도를 살펴보고 유사·중복성 및 지원방식의 적절성에 대하여 논의함

가. 상속·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 상속 또는 증여 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발생²⁸⁾
 - 미달 신고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증여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 상당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
 - 단,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40%를 산출세액에 가산
 - 또한 일반적인 무신고 시에는 20%를 산출세액에 가산하며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40%를 가산

<표 III-2> 상속·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사유	가산세액
일반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부정 무신고	부정 무신고납부세액×40%
일반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10%
부정 과소신고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40%
과소신고 가산세 제외	①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증여)재산 미확정 ② 상속(증여)공제 적용*의 착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제54조 ③ 상속(증여)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자료: 국세청, 「가산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7&cntntsId=7721>, 검색일자: 2023. 3. 17.

28)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1&cntntsId=7729>, 검색일자: 2023. 2. 1.

<표 III-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 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 검색일자: 2023. 3. 20.

<표 III-4>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 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 검색일자: 2023. 3. 20.

- 부정행위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의미하며, 이를 받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서는 부정행위의 유형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① 상속·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架空)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②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③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는 방법으로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증빙 등 파기, 재산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는 경우, 계산서·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전자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등

<표 III-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 가. 「소득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 검색일자: 2023. 3. 20.

〈표 III-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법 제26조의2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架空)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 검색일자: 2023. 3. 20.

〈표 III-7〉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제3조(조세 포탈 등)

-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 검색일자: 2023. 3. 20.

-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규모 추이는 다음과 같음
 - 무신고와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모두 포함된 수치임

<표 III-8> 연도별 상속·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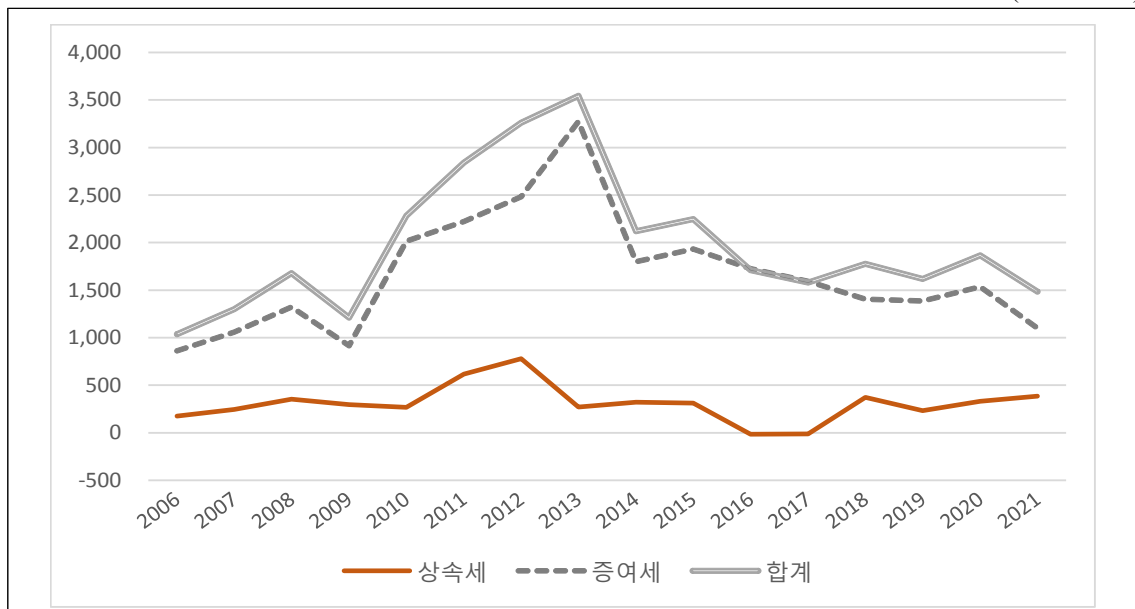
(단위: 억원)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상속세	174	244	355	297	267	618	778	271
증여세	862	1,058	1,324	916	2,015	2,223	2,482	3,272
합계	1,036	1,302	1,679	1,213	2,283	2,841	3,260	3,543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상속세	321	314	-14	-13	372	232	330	385
증여세	1,800	1,933	1,726	1,593	1,404	1,385	1,535	1,099
합계	2,120	2,247	1,712	1,581	1,776	1,617	1,865	1,484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III-2] 연도별 상속·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규모 추이

(단위: 억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나. 상속·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

- 상속 또는 증여 재산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규정된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는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 발생²⁹⁾
 -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³⁰⁾ × 100,000분의 22(이자율)
 - 2020년 1월 1일부터는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
 - 「국세징수법」상의 가산금제도와 「국세기본법」상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제도를 통합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일원화함

<표 III -9>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 검색일자: 2023. 3. 23.

29)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1&cntntsId=7729>, 검색일자: 2023. 3. 23.

30) 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표 III-10>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 검색일자: 2023. 3. 20.

-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규모는 다음과 같음
 - 무신고와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모두 포함된 수치임

<표 III-11> 연도별 상속·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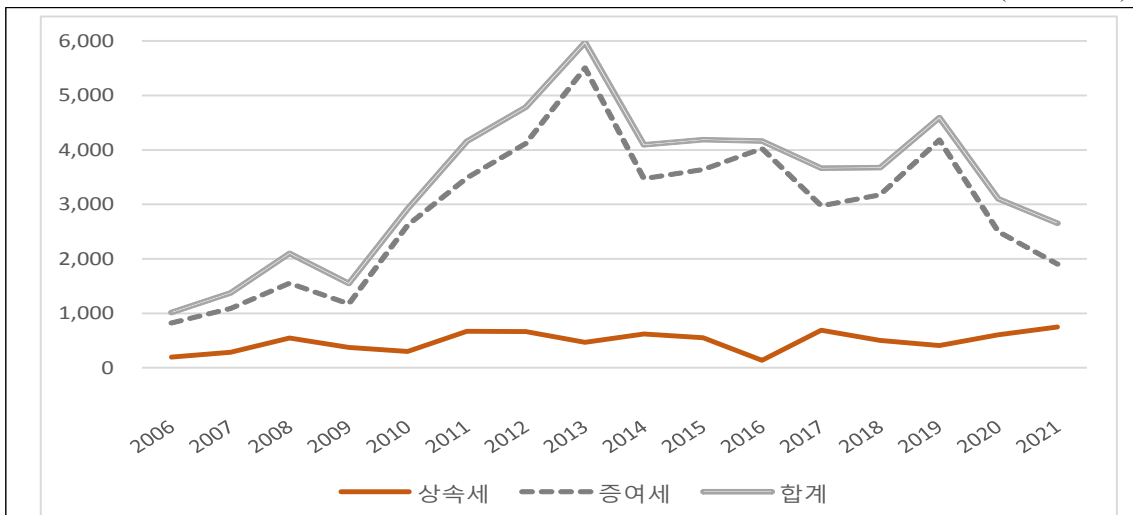
(단위: 억원)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상속세	195	283	547	374	299	668	667	469
증여세	823	1,091	1,553	1,174	2,619	3,489	4,117	5,503
합계	1,018	1,373	2,101	1,548	2,918	4,157	4,783	5,972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상속세	622	552	138	690	500	409	604	750
증여세	3,474	3,638	4,025	2,974	3,176	4,182	2,500	1,902
합계	4,096	4,190	4,164	3,664	3,677	4,591	3,103	2,652

주: 『국세통계연보』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구분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III-3] 연도별 상속·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 규모 추이

(단위: 억원)



주: 『국세통계연보』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구분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다. 소결

-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신고세액공제와 유사성이 있음
 - 두 제도는 유사한 목적을 갖고 있으나 지원방식은 다름
 - 신고세액공제는 기한 내에 자진신고하면 세금의 일부를 감면함
 -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일부를 산출세액에 가산함

-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등 긍정적인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 가산세 등 부정적인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 혹은 두 방식을 모두 활용하는 것 중에 어떠한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검증할 수 있다면 본 제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임
 - 그러나 인센티브 제공 방식에 따른 차별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도 미미함(Slemrod, 2019)

- 신고세액공제와 불성실가산세의 자진신고 유도 효과를 엄밀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인센티브 제공 방식에 따른 행태 변화에 큰 차이가 없고 대다수의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제도와 상관없이 자진신고한다고 가정하면 불성실가산세 제도가 신고세액공제 제도보다 비용-효과적(cost-effective)임
 - 현 제도에서는 과세인프라 확충, 개인의 납세의식 등 신고세액공제와 무관한 이유로 기한 내에 신고하는 납세자들도 세액공제를 받음

3.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

- 본 절에서는 상속·증여세 외의 다른 세목에 있는 신고세액공제 등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단, 상속·증여세의 경우 다른 세목에 비해 생애주기상 납부 빈도수가 낮고 제도 운영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 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가. 양도소득세 신고세액공제

- 2011년 폐지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2개월 이내 예정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하였음
 -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산 양도분은 예정신고 후 자진납부한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적용
 -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는 가산세 없음
 -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산 양도분은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등 일부 자산에 대해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며 단계적 축소
 - 2011년 1월 1일 이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모든 자산에 대하여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였으며,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표 III-12> 연도별·자산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와 무신고가산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2009. 12. 31. 이전 양도분	2010. 1. 1.~12. 31. 양도분	2011. 1. 1. 이후 양도분
·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기타자산(골프회원권 등)	· 예정신고세액공제 10% · 무신고가산세 없음	· 예정신고세액공제 5%(29만 1,000원 한도) · 무신고가산세 10% 적용	· 예정신고세액공제 없음 · 무신고가산세 20% 적용
·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		· 예정신고세액공제 5%(한도액 없음) · 무신고가산세 10% 적용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2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미등기 양도 · 지정지역* 3주택이상자		· 예정신고세액공제 없음 · 무신고가산세 20% 적용	

주: *는 지정지역: 강남, 서초, 송파구(일반세율+10% 적용)

자료: 국세청,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꼭 챙기세요!」, 보도자료, 2010. 1. 21.

- 2011년 제도 폐지의 취지로 근로소득세·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월 또는 매분기 신고하지만 세액공제는 없다는 점,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는 등 과세인프라가 정비되었다는 점이 언급됨

나. 기타 신고 및 납세순응 관련 제도

1)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04조의8)

□ 납세자에 대한 세무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신고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4년 도입됨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 (소득세 및 법인세) 해당 납부세액에서 2만원을 공제하며,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함
 - (부가가치세) 해당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대리하는 경우
 - 세무사³¹⁾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를 전자신고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해당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납세자 1인당 2만원을 공제하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경우 당해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납세자 1인당 1만원을 공제
 - 세무사는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500만원)
- 전자고지 신청에 대한 세액공제
 - 납세자가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신청한 경우, 납부고지서 1건당 1천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표 III-1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04조의8(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라 한다)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②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3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을 포함

<표 III-13>의 계속

한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 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에 같은 법 제63조 제3항,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금액을 가감(加減)한 후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전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세무사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은 3백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750만원)으로 한다.

⑤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하는 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세의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전단에 따라 결정·징수하는 소득세
2.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제6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결정·징수하는 부가가치세
3. 「국세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각 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국세의 납부세액에서 「국세기본법」 제83조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 검색일자: 2023. 7. 31.

2) 전자세금계산서세액공제(「소득세법」 제56조의3)

-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계산서 발급 건당 200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하는 전자계산서에 해당하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함

<표 III-14> 「소득세법」 제56조의3

제56조의3(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 ①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16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제163조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검색일자: 2023. 7. 31.

3) 기장세액공제(「소득세법」 제56조의2)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記帳)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기장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함

$$\text{기장세액공제} = \min\left(\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한 소득금액}}{\text{종합소득금액}} \times 20\%, 100\text{만원}\right)$$

<표 III-15> 「소득세법」 제56조의2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 ① 제160조 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記帳)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기장세액공제”(記帳稅額控除)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 2.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기장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검색일자: 2023. 7. 31.

다. 소결

- 현재 상속·증여세 외에 다른 세목에서는 자발신고 유도를 위한 신고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는 2011년 폐지됨
 - 전자신고 세액공제 및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는 전자세정 정착을 위한 제도로 보는 것이 적절
 - 기장세액공제의 경우 기장이라는 행위가 납세순응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측면에서 기한 내에 신고만을 요구하는 신고세액공제와는 구분됨

4.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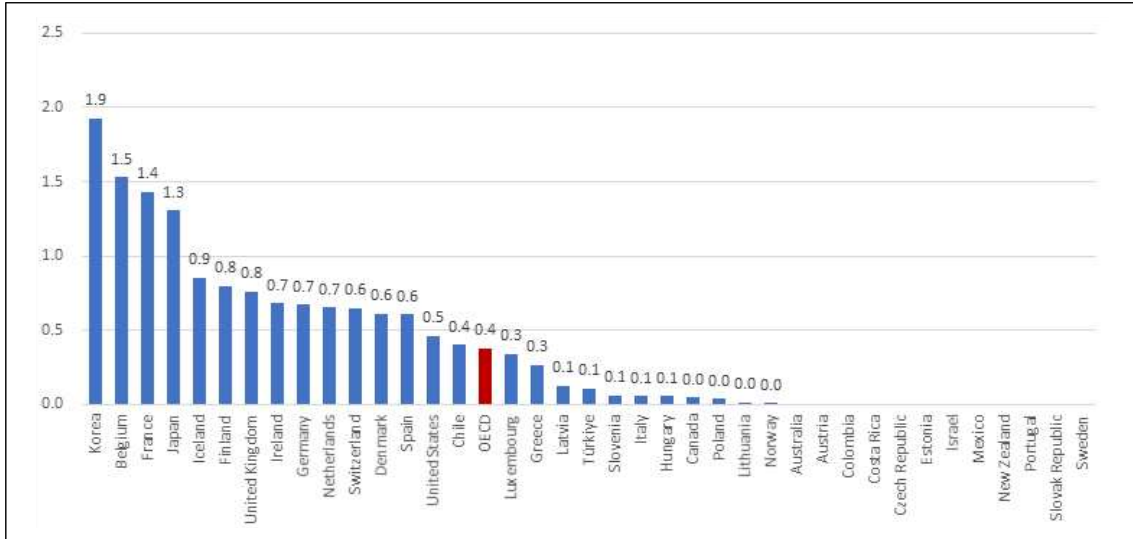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외국에 비해 높은 상황에서 신고세액공제가 세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제도를 폐지하거나 공제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부담 수준을 주요국과 비교하고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논의함
- [그림 III-4]에는 세부담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OECD 회원국의 총세수 대비 상속·증여세 세수 비중이 제시되어 있음
 - 2020년³²⁾ 기준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회원국³³⁾의 평균은 0.4%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1.9%로 OECD 회원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 그러나 국가 간 세수 차이는 인구구조, 자산 분포 등 다양한 요인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
 - 예컨대, 상속세제가 동일하더라도 사망률과 자산집중도가 높은 경우 상속세 세수가 큼
 - 총세수가 이러한 요인을 적절하게 통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세수 통계는 세부담 비교에 적합하지 않음

32) 2021년의 경우 일부 국가의 자료가 공개되지 않음

33) OECD 회원국 38개국 중 상속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 우리나라 등 24개국

[그림 III-4] OECD 회원국의 총세수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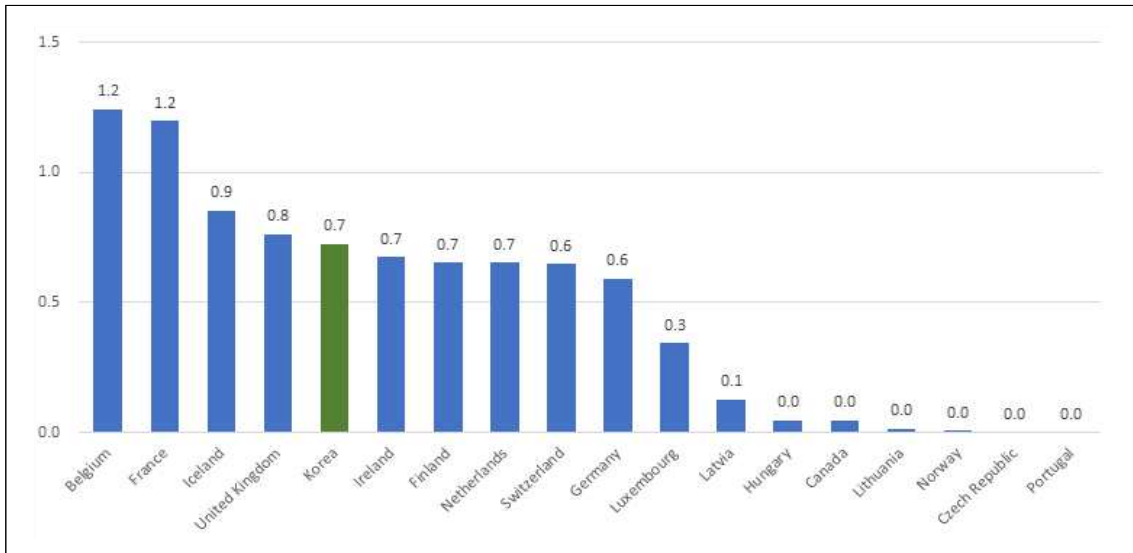
(단위: %)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https://stats.oecd.org/>)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I-5] OECD 회원국의 총세수 대비 상속세 비중 비교

(단위: %)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https://stats.oecd.org/>)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국가 간 과세방식, 세율체계, 주요 공제제도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담을 비교하기 위해서 동일한 자산이전 상황을 가정하고 각국의 세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실효세율(상속 및 증여 가액 대비 결정세액)을 비교할 수 있음

- 오종현·강성훈(2017)에서는 다양한 자산이전 상황을 가정하고 우리나라,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의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비교하였는데, 이하에서는 그 내용을 정리함
 - 자산이전 상황은 크게 일시적 자산이전과 지속적 자산이전으로 구분
 - 일시적 자산이전은 일정 규모의 자산이 한 번에 이전된 것을 의미(예: 피상속자의 사망으로 인한 자산이전, 주택구입자금을 위한 증여와 같이 비교적 큰 규모의 자산이전)
 - 지속적 자산이전은 일정 규모의 자산이 일정 기간에 걸쳐 주기적으로 증여된 것을 의미함³⁴⁾(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자금 등)
 - 지속적 자산이전 시나리오에서는 연간 기초공제액(예: 미국과 일본), 증여재산 합산과세제도 등을 반영할 수 있음(예: 우리나라와 프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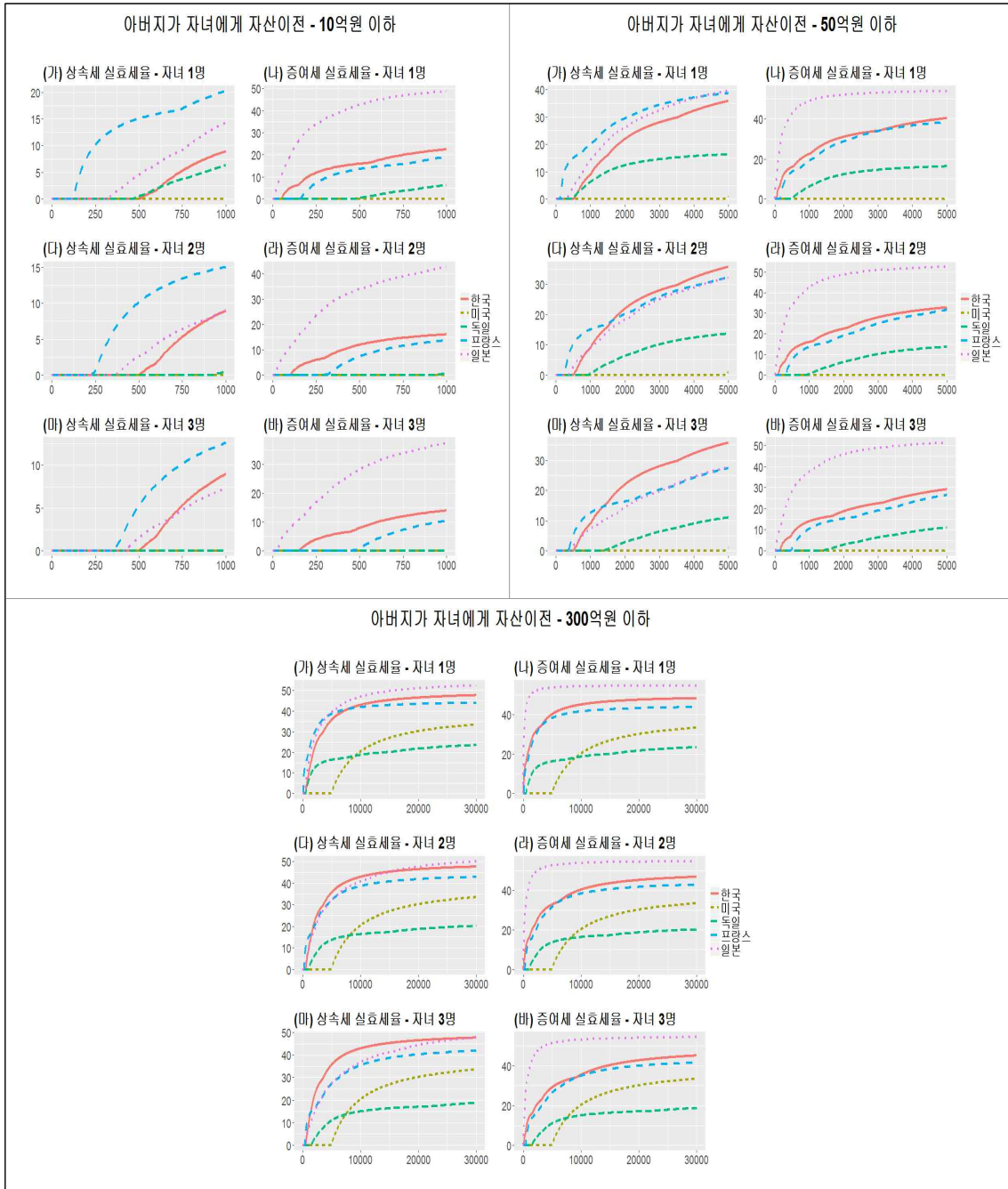
- 일시적 자산이전의 경우 크게 세 가지의 자산이전 상황을 고려함
 - (상황 1) 아버지가 자녀 1/2/3명에게 자산이전
 - 상속인 수에 따른 세부담 변화 분석
 - (상황 2) 아버지가 배우자와 자녀 1/2/3명에게 자산이전
 - 배우자 공제 차이가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상황 3)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자녀 1/2/3명에게 자산이전
 - 증여공제 적용 시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제도적 특징이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상황 1)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시작점은 중간 수준이며, 상속재산가액이 높은 구간에서 세부담이 높음
 - 예컨대, 자녀가 3명인 경우 이전자산가액 약 15억원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한 주요국의 경우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이 낮아짐
 - 증여세 부담은 우리나라가 일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³⁵⁾

34) 분석의 단순화를 위하여 자산이전 규모와 주기가 일정하다고 가정

35) 단, 일본의 경우 지속적 자산이전에 대한 공제제도 효과를 반영할 경우 증여세 부담은 크게 감소함

[그림 III-6] 일시적 자산이전에 대한 세부담 비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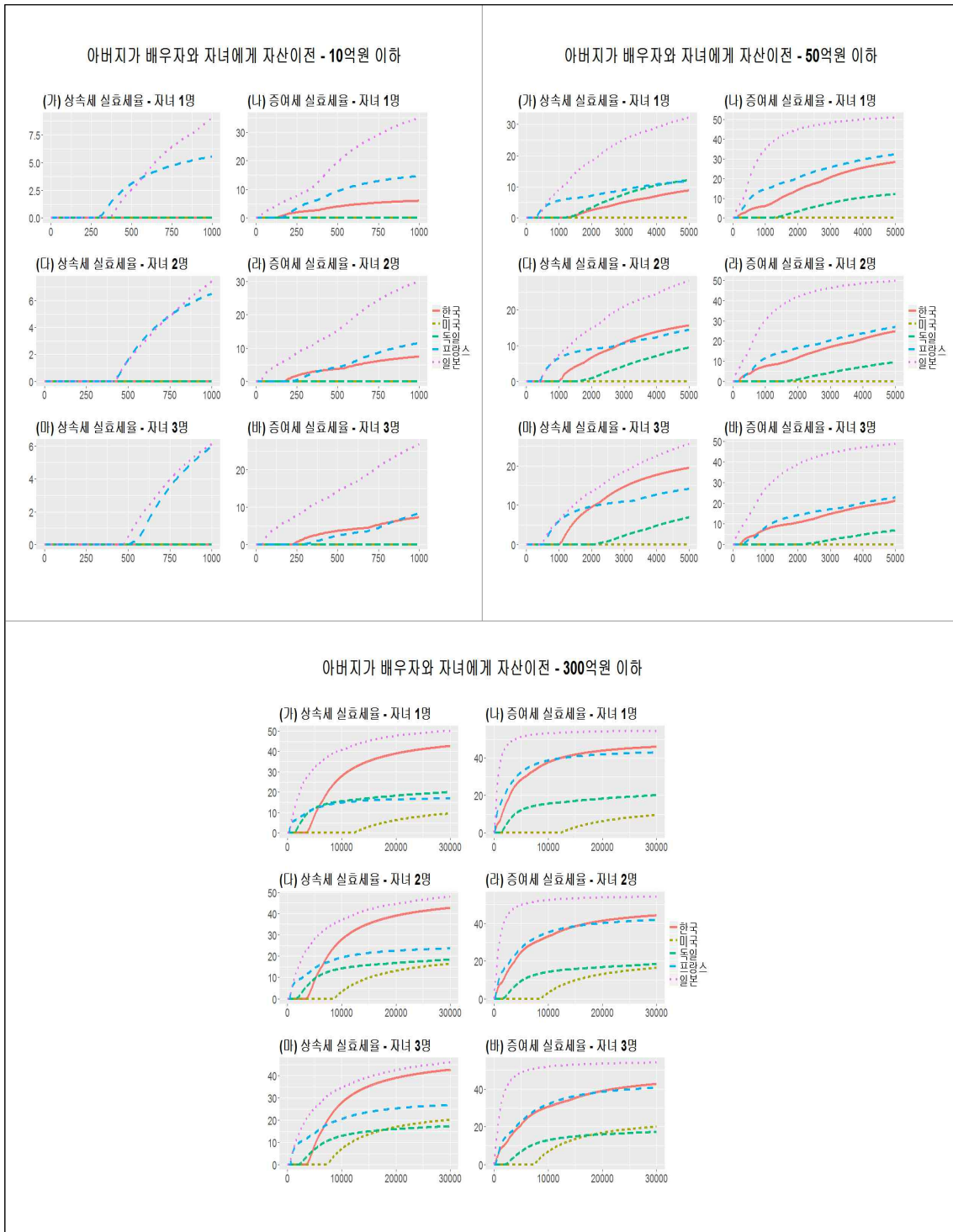


자료: 오중현·강성훈(2017), p. 68, [그림 IV-1]

- (상황 2)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공제로 인해 이전재산가액 60억원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세부담이 낮은 편에 속하며, 증여세의 경우 이전재산가액 100억원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세부담이 중간 수준이고 100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높은 수준임
- 프랑스는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전액을 공제해주지만 증여의 경우 공제한도가

작아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 격차가 크게 나타나며, 증여세 부담은 이전자산가액 약 150억원까지는 일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II-7] 일시적 자산이전에 대한 세부담 비교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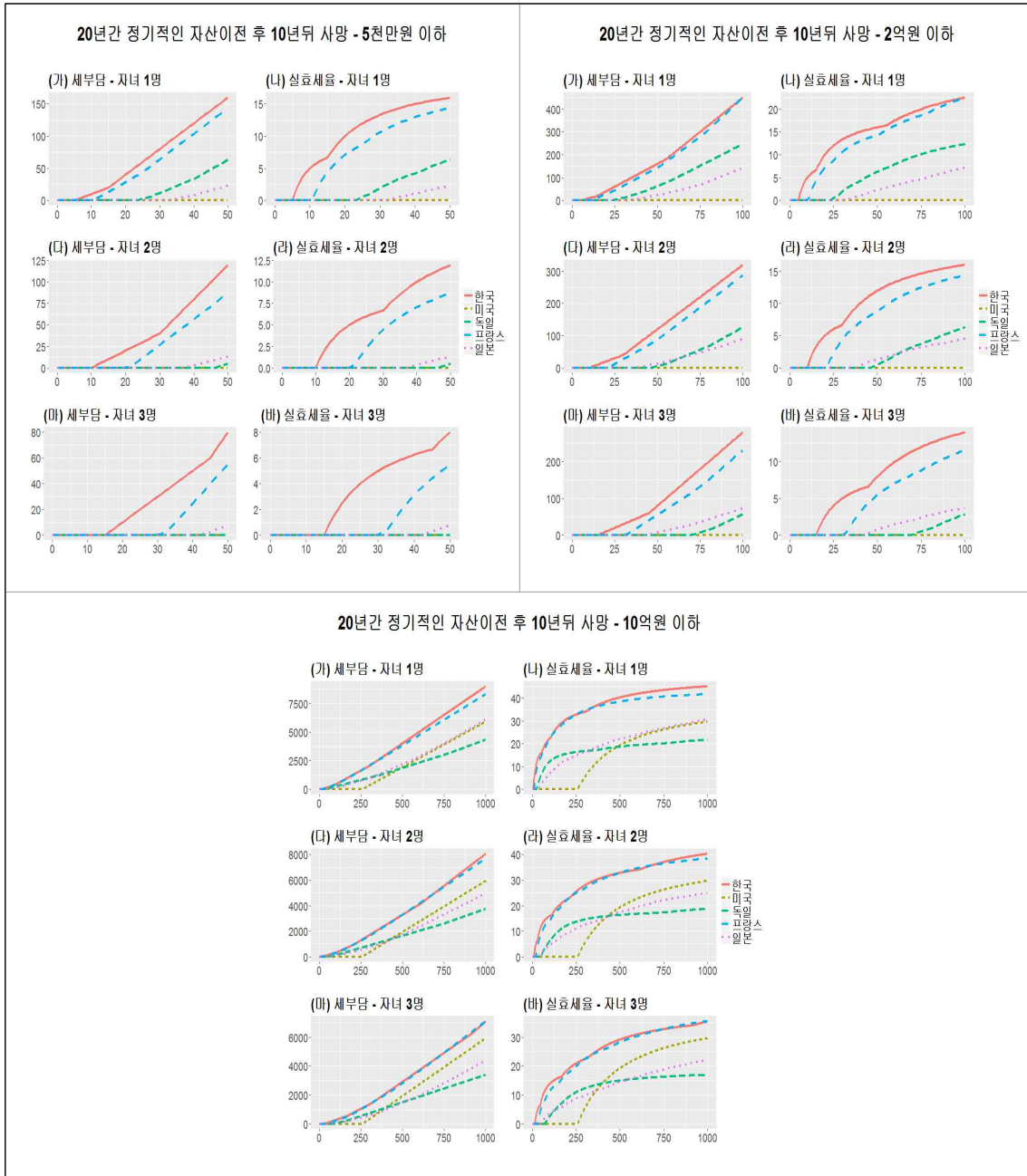
자료: 오종현·강성훈(2017), p. 69, [그림 IV-2]

- 지속적 자산이전의 경우 50세인 아버지가 20세인 자녀에게 20년간 매년 동일한 규모의 자산을 이전하는 상황을 고려함³⁶⁾
 - 자산을 이전받는 자녀의 수와 사망 시점에 따라 다음의 상황으로 나누어 자산 이전 세부담을 비교함
 - (상황 1) 아버지가 자녀 1명에게 20년간 자산이전 후 10년 뒤(79세) 사망
 - (상황 2) 아버지가 자녀 2명에게 20년간 자산이전 후 10년 뒤(79세) 사망
 - (상황 3) 아버지가 자녀 3명에게 20년간 자산이전 후 10년 뒤(79세) 사망

- 지속적 자산이전을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의 증여세 부담이 주요국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남
 - 우리나라의 증여공제는 10년간 자녀 1인당 5,000만원이며 이는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매년 1인당 500만원을 공제해주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음
 - 프랑스의 증여공제액을 연평균 1인당으로 환산하면 약 989만원이고 일본의 경우에는 약 969만원임
 - 일시적 자산이전만 고려할 경우 일본의 증여세 부담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증여할수록 증여세 부담은 크게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
 - 미국과 독일은 증여재산 합산기간이 평생이지만 공제액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높음

36) 연령을 고려하는 이유는 일본의 경우 60세 이상의 부모가 20세 이상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상속 시 정산과세제도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

[그림 III-8] 지속적 자산이전에 대한 세부담 비교



자료: 오종현·강성훈(2017), p. 71, [그림 IV-4]

- 요약하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세부담은 이전 재산가액이 높은 구간에서 주요 국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
- 그러나 국가 간 비교를 통한 적정 세부담 논의의 한계에 유의할 필요
 - 상속·증여세 외에 다른 제도, 그 외 사회적·경제적 특징 등 개별 국가의 특이

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는 바람직하지 않음

- 국가 간 특징이 적절히 고려되는 경우에도 주요국의 평균이 바람직한 수준이라는 가정에 의존
- 상속·증여세의 세부담 적정성을 평가할 때에는 재분배에 대한 선호, 과세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행태변화, 무상이전 자산의 분포, 다른 세제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Farhi and Werning, 2010; 2013; Piketty and Saez, 2013)

- 기본적으로 세부담 수준은 세율체계와 인적공제 및 일괄공제 등을 이용해 조정하는 것이 적절

IV. 효과성 분석



IV. 효과성 분석

1. 이론적 논의

- 상속과 증여에 대한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3%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
 - 1967년 세원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상속과 증여에 신고세액공제를 도입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음
 - 상속세는 자산이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증여세는 3개월 이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신고 기간 내에 상속세와 증여세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세액공제 제도가 시행 중임
 - 최근 과세 인프라가 확충되고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가 증진되면서 신고세액공제 혜택이 축소됨
 - 2016년 이전에는 공제율이 10%였으나 2017년에는 7%, 2018년에는 5%, 2019년 이후에는 3%가 적용되어 단계적으로 하락함

- 신고세액공제는 자진신고 유도를 통해 무신고 Tax Gap을 줄이는 것이 주된 목적임
 - Tax Gap이란 정확한 세법을 적용했을 때 납부해야 할 세액(이론적 세부담)과 법정기한 내에 자진하여 납부한 세액(자진납부 세액) 간의 차액을 의미함
 - Tax Gap은 일반적으로 무신고 겹, 과소신고 겹, 과소납부 겹으로 구분되며 신고 세액공제는 무신고 겹과 관련이 있음
 - Tax Gap을 줄인다는 것은 세수를 확보하고, 조세부담의 불공평한 배분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함
 - 무신고 세액만큼 정직한 납세자 세부담의 증가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과세체계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음

-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신고세액공제 규모는 2021년 기준 상속세 1,277억원이고, 증여세는 2,444억원임
 - 2023년 『조세지출예산서』에 제시된 전망치를 보면 상속에 대한 신고세액공제 규모가 상당히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됨
 - 2022년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규모 전망치는 7,384억원이고 증여세는 2,946억원임
 - 2023년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규모 전망치는 8,229억원이고 증여세는 3,236억원임
 - 일반적으로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 규모가 결정하므로 상속증여재산 규모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최근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상속증여 건수가 증가하고, 부동산 및 금융 시장 성장 등으로 피상속인 또는 증여인당 이전자산의 규모가 증가할 수 있음

- 국세청은 1997년부터 국세행정에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원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여 세금 탈루 및 지하경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함
 - 현진권·김정훈(2002)에 따르면, 국세청은 1967년부터 국세행정의 전산화가 시작되었으며 그 과정은 총 5기로 구분됨
 - 제1기(1967~1970년): 전산 시스템 도입 준비
 - 제2기(1971~1981년): 과세자료 처리 중심의 전산 개발기
 - 제3기(1982~1992년): 전산처리 업무영역의 확대기
 - 제4기(1993~1996년): 사무관리 자동화 등 세정 혁신기
 - 제5기(1997~2001년): 국세통합시스템(TIS)의 도입으로 선진 세정을 구축하고, 기능별 조직 정착의 기반을 구축
 - 1997년 1월 국세통합시스템을 개통하면서 국세 업무를 대부분 전산으로 처리하기 시작함
 - 국세통합시스템은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과 사업자의 모든 소득과 자산 내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전산 시스템임
 - 유한옥(2008)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3년 신고성실도 평가체계와 과세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소득조사 인프라를 확충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국세청은 2009년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도입하여 세부담 없이 재산을 축적하거나 호화로운 소비생활을 하는 세금 탈루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함
 - 국세청은 신고소득자료, 재산보유자료, 소비지출자료를 통합 비교 분석하여 지능적 탈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의심거래 보고제도와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를 운영하면서 탈세 등의 비정상적인 징후가 감지되면 이를 검찰청·국세청 등과 자료 협조를 하고 있음
 - 금융기관 종사자의 금융거래가 불법자금이라는 의심이 가거나 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가 발생하면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함
 - 이 제도는 불법 자금세탁 적발 및 예방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임

- 과세 인프라가 구축되고 조세 순응(tax compliance)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이 이뤄지면서 신고세액공제의 역할이 감소함
 - 무신고로 인한 납세자의 순 기대 편익이 0보다 크면 과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것임
 - 즉, 납세자가 과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납부세액이 (무신고 발견확률)×(납부세액+가산세)+세액공제액보다 큰 경우임
 - 무신고로 인한 순 기대 편익은 $(1 - \text{무신고 발견확률}) \times \text{납부세액} - (\text{무신고 발견확률}) \times \text{가산세} - \text{자진신고로 인한 편익(신고세액공제액)}$ 임
 - ① 국세청의 과세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무신고 발견확률이 높을수록,
 - ② 신고세액공제액이 클수록 납세자의 상속·증여에 대한 무신고 유인은 감소함
 - 만약 무신고 발견확률이 충분히 높고 가산세가 작지 않다면 납세자는 신고세액공제제도가 없더라도 자진신고할 유인이 존재함

- 무신고 판단의 근거가 되는 확률을 추정해보면, 신고세액공제율 10% 기준으로 추정한 확률은 0.75이고, 신고세액공제율 3%의 경우에는 0.81임
 - 무신고 유인은 납부세액과 (무신고 발견확률)×(납부세액+가산세)+세액공제액 간의 차이에 의해 결정됨
 - 다음의 조건에서 무신고 유인 확률이 감소함

- 무신고 발견확률 < $(\text{납부세액} - \text{신고세액공제}) / (\text{납부세액} + \text{가산세})$
- 신고세액공제는 납부세액의 10%이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임
- 따라서 무신고 발견확률은 $\frac{(1-x\%)}{(1+0.2)}$ 이며, 여기서 x 는 신고세액공제율임

□ 따라서 신고세액공제율 10%가 3%로 감소하면서 무신고 발견확률이 0.6포인트 더 높아져야 기존과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신고세액공제 축소는 과세 인프라 등의 확충으로 무신고 발견확률이 증가한 경우에만 그 타당성이 인정받을 수 있음

□ 이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신고세액공제 축소는 무신고 행위 억제에 대한 신고세액공제 기여도의 감소를 의미함

- 신고세액공제의 기여도는 신고세액공제로 인한 무신고 확률 감소분으로 추정할 수 있음
- 무신고 유인을 감소시키는 무신고 발견확률은 신고세액공제율 10% 적용 시 0.083포인트 감소하며, 신고세액공제율이 3%라면 0.058포인트 감소함
 - 신고세액공제가 없을 경우 무신고 발견확률이 0.833 이상인 경우에 무신고 유인이 감소함
- 따라서 무신고 행위 억제에 대한 신고세액공제 기여도는 신고세액공제율이 10%에서 3%로 감소하면서 무신고 확률 기준 0.06포인트 감소함

□ 무신고 행동 억제를 위해 요구되는 무신고 발견확률보다 실제 무신고 발견확률이 높다면 신고세액공제가 납세자의 자진신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 현행 일반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고려할 때 실제 무신고 발견확률이 0.833보다 크다면 신고세액공제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실제 무신고 발견확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자료의 부족으로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지만 과세 행정의 전산화, 지하경제 양성화 및 탈루행위 억제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근거로 무신고 발견확률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증가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증여의 경우, 과세 행정의 효율성이 증가하더라도 모든 증여를 쉽게 과

악하기는 쉽지 않음

- 상속과 달리 증여자 파악이 쉽지 않음
-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득이 없으면서 고액 전세에 살고 있는 납세자를 파악하여 증여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증여는 제도적으로 쉽게 파악하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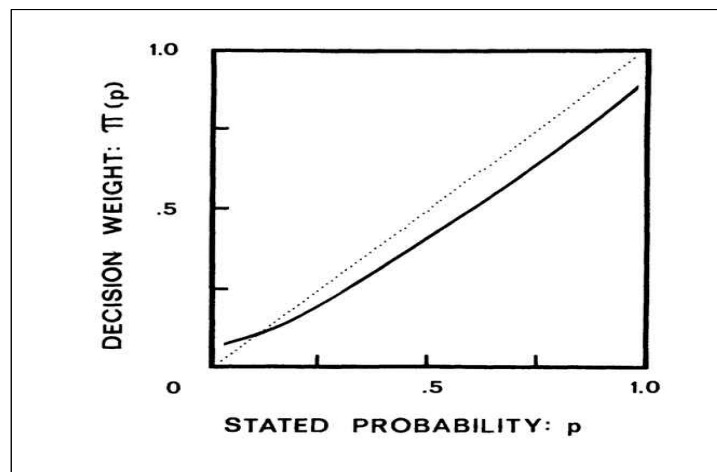
□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국세청의 과세 행정이 고도화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실제 무신고 발견확률이 증가하더라도 납세자가 인식하는 주관적 무신고 발견확률에 따라 신고세액공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행동경제학의 많은 연구들은 확률이 낮은 경우에 사람들은 그 확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확률이 높은 경우에는 그 확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줌(Kahneman and Tversky, 1979; Tversky and Kahneman, 1991; Robin, 2000)

- [그림 IV-1]을 살펴보면, 점선은 기대이론에서의 확률을 의미하고 실선은 결정 확률(decision weight)을 나타냄
- 기대이론의 확률이 낮으면 결정 확률이 기대이론의 확률보다 크고 기대이론의 확률이 높을수록 결정 확률이 기대이론보다 더 큰 경향이 나타남

○ 납세자가 무신고 발견확률을 과소평가할수록 신고세액공제가 자진신고 행위에 영향을 줄 여지가 존재함

[그림 IV-1] 결정확률(Decision Weight)



자료: Kahneman and Tversky(1979)

-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상속과 증여에 대한 신고세액공제 축소로 인해 이전자산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하였고, 조세회피 확률을 과소평가할 수 있어 신고세액공제 축소는 조세회피 행위 증가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음
 - 본 연구는 다음의 가설을 세우고 기초통계분석과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이를 검증하고자 함
 - 가설: 신고세액공제 축소로 인해 무신고율이 증가함
 - 본 연구는 자료의 한계로 실제 무신고 발견확률뿐만 아니라 주관적 무신고 발견확률 역시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기초통계분석 및 회귀분석을 사용해 가설을 검증함
 - 만약 가설이 타당하게 검증된다면 이는 신고세액공제 축소로 무신고 유인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함
 - 이 결과는 국세청의 과세 행정 역량 향상으로 인한 무신고 발견확률이 증가하였으나 이를 납세자가 과소평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기초통계분석에서는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따라 무신고율과 무신고 Tax Gap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봄
 - 여기서 무신고율은 피상속인 또는 수증인 대비 무신고자 비율을 의미하고 Tax Gap 비율은 총결정세액 대비 Tax Gap 비율을 의미함
 - Tax Gap은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세액을 의미함
 - 무신고 Tax Gap은 무신고자의 결정세액을 의미함
 - 이론적으로 신고세액공제 감소가 납세자의 자진신고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하기 힘들
 - 실제 무신고 발견확률, 주관적 무신고 발견확률 등 다양한 요인이 납세자의 조세 순응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임
 - 본 연구는 자료의 한계로 실제 무신고 발견확률뿐만 아니라 주관적 무신고 발견확률(결정 확률) 역시 추정하기 어려움
 -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 축소가 조세회피 행위에 영향을 주었다면 신고세액공제 축소 기간에 무신고율과 Tax Gap 비율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음
 - 즉, 조세회피 행위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지만, 신고세액공제 축소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면 신고세액공제와 무신고율·Tax Gap 비율은 양(+)의 상관관계가 관찰될 것으로 판단됨

- 상관관계가 관측되더라도 신고세액공제 축소가 무신고율과 무신고 Tax Gap 비율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납세자의 조세 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 필요함
 - 하지만, 과세자료에는 세부담 관련 정보만 존재하므로 조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적절하게 통제하면서 신고세액공제와 무신고율·무신고 Tax Gap 비율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음
 -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자료의 한계가 존재하지만, 본 연구는 신고세액공제와 무신고율 간의 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① Pooled 패널자료를 지역별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고정효과 모형을 고려하고 ② 도구변수 분석방법을 사용함
 - 고정효과 모형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요인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데 효과적이고, 도구변수를 사용한 추정방법은 생략변수에 의한 편의를 줄이는 데 유용함
 - 지역별 상속재산 규모별 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따른 실효세율 증가 수준이 다르므로, 이를 도구변수로 활용함
 - 여기서 신고세액공제 축소는 외생적으로 결정되고 시행된 것으로 가정함

2. 분석자료 및 분석결과

가. 분석자료

- 본 연구는 상속과 증여에 대한 2016~2021년 국세청 결정자료를 활용하여 신고세액공제율 변화가 무신고율과 무신고 Tax Gap 비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봄
 - 2016~2021년 기간에 신고세액공제가 10%에서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되었음
 - 국세청 과세자료는 크게 과세 신고자료와 결정자료로 구분됨
 - 과세 신고자료는 납세자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제공하는 정보이며, 결정자료는 국세청이 수집·분석한 추가적인 정보를 토대로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한 자료임
 -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정부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됨
 -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며, 이

정보는 결정자료에서만 확인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① 신고세액공제액을 받지 못하고 ②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한 경우를 무신고로 간주함
 - 신고세액공제액을 받지 않았지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0인 경우가 존재하며, 이는 납부세액이 0이기 때문임
 - 이 경우는 무신고한 경우로 고려하지 않음
- 따라서 무신고율은 총피상속인 대비 무신고자 비율을 의미하고, 무신고 Tax Gap 비율은 총결정세액 대비 무신고 납세자의 결정세액 비율을 의미함

□ 본 연구는 초고액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외한 전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함

- 상속·증여한 경우 초고액 자산가의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특정인이 유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국세청은 총상속재산가액상·증여재산가액 기준 상위 5%에 대해 상위 10명을 제외한 후 10% 단순임의표본추출을 통해 자료를 제공함
- 하지만, 국세청은 하위 95%는 전수 추출하여 제공함

□ 결정(경정) 자료는 신고자료와 달리 이전 연도의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자료가 포함됨

- 신고자료와 국세청이 수집한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과세가액 평가가 적정한지, 누락된 내용은 없는지 등을 조사한 뒤 납부세액이 확정된 자료임
- 국세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데 1년 이상 걸릴 수 있으므로 각 연도 결정자료에는 해당 연도 이전 연도의 신고자료가 포함되었을 수 있음
- 연도별 실제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가액, 공제, 납부세액 등은 결정자료의 경우와 다를 수 있으므로 연도별 추이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t 연도에 결정되지 않은 신고자료의 과세가액, 산출세액, 공제금액, 납부세액 등이 t 연도 이전에 신고되었으나 t 연도에 납부세액이 결정된 자료의 경우와 유사할수록 추이 분석 결과의 편이가 작을 것으로 판단됨

□ 상속세 결정 피상속인 수와 과세가액 규모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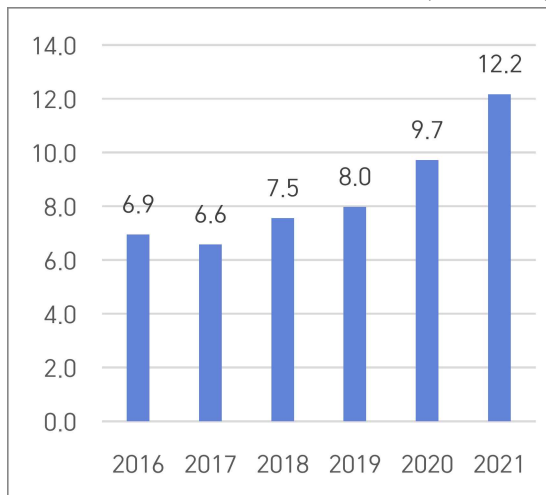
- 과세가액 증가 속도가 피상속인수의 경우보다 평균적으로 더 커 피상속인 1인당 과세가액은 연평균 4.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6~2021년 기간에 공제제도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부동산 등 가 격은 상승하여 과세시작점을 초과하는 피상속인 수 및 과세가액 규모는 증가 한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에서는 공제금액이 물가에 따라 연동되어 있지 않음

[그림 IV-2] 피상속인 수 및 수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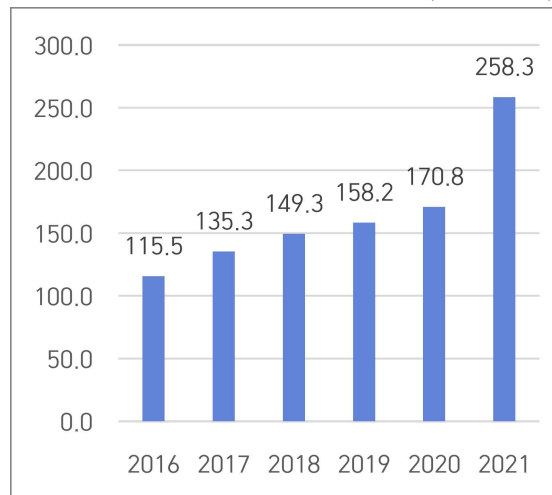
<상속: 피상속인 수>

(단위: 천명)



<증여: 수증자 수>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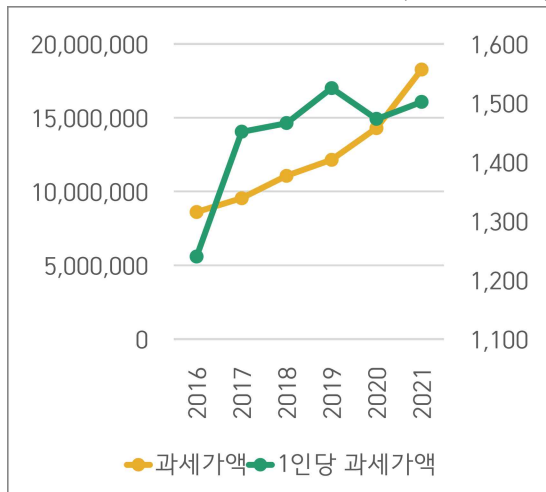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상속세 결정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IV-3]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과세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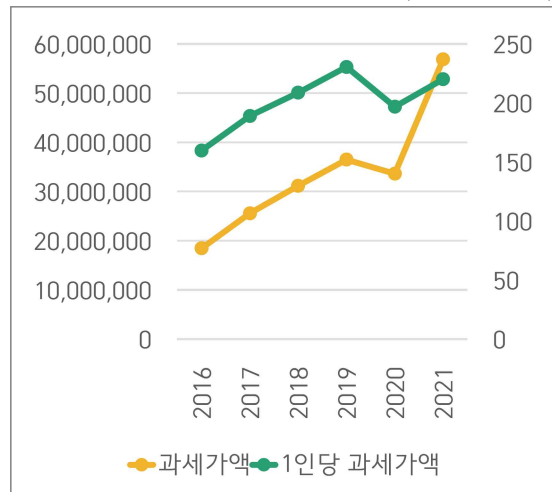
<상속>

(단위: 백만원)



<증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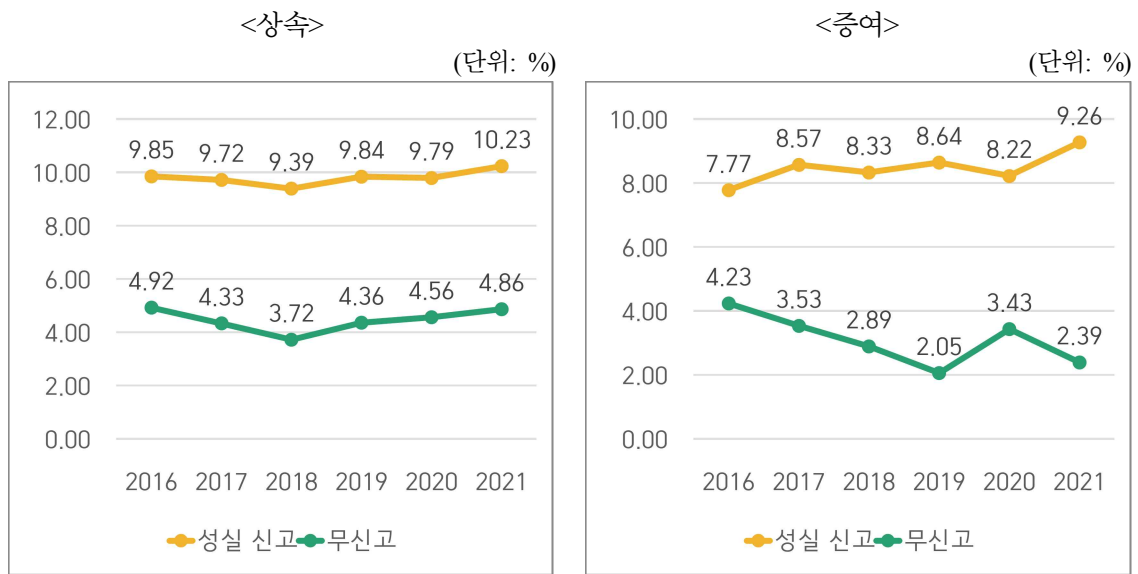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자료: 국세청 상속세 결정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상속과 증여에 대한 무신고 기준 실효세율은 성실신고의 경우와 비교하여 더 낮으며, 이는 세부담이 낮은 집단에서 무신고가 더 많이 발생했음을 시사함
 - 상속의 실효세율은 증여보다 더 높은 경향이 있음
 -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성실신고 기준 실효세율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증여의 세부담이 상속보다 더 빠르게 증가함
 - 상속에 대한 성실신고 기준 실효세율은 연평균 0.08%p 증가하였고 증여세의 경우에는 0.17%p 증가함
 - 상속에 대한 무신고 기준 실효세율은 2016~2018년까지 하락하다가 2019년부터 상승함
 - 증여에 대한 무신고 기준 실효세율은 대체로 하락추세를 보임
 - 2016~2019년에 무신고 기준 실효세율은 감소하였으며 2020년 크게 증가한 후 2021년에 다시 감소하였으며, 2021년의 실효세율은 2.39%로 2018년보다 작고, 2019년보다 큼

[그림 IV-4] 상속과 증여에 대한 실효세율



자료: 국세청의 상속세와 증여세 결정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나. 기초통계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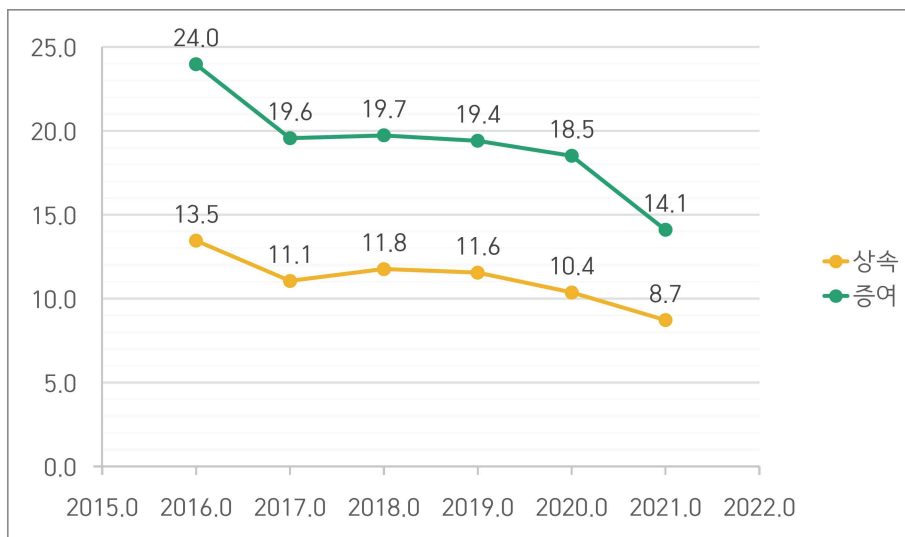
- 2016~2021년 기간에 신고세액공제로 인한 성실신고 기준 실효세율 감소율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는 동 기간 신고세액공제율이 10%에서 3%로 매년 단계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임

- 신고세액공제로 인한 성실신고 기준 상속세 실효세율 감소율은 증여의 경우와 비교하여 더 큼
- 신고세액공제로 인한 2021년 상속세 실효세율 감소율은 0.30%p이고 이는 2016년과 비교하여 0.60%p 감소한 수준임
 - 상속 신고세액공제로 인한 실효세율 감소율은 연평균 0.1%p임
- 신고세액공제로 인한 2021년 증여세 실효세율 감소율은 0.28%p이고 이는 2016년과 비교하여 0.57%p 감소한 수준임
 - 증여 신고세액공제로 인한 실효세율 감소율은 연평균 0.095%p임
- 신고세액공제 축소는 세부담 증가와 관련이 있으므로 2016~2021년 기간에는 신고세액공제율을 10%로 유지한 경우와 비교하여 상속과 증여에 대한 실효세율이 증가함

[그림 IV-5] 무신고율

(단위: %)



자료: 국세청 상속세 결정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상속과 증여에 대한 무신고 Tax Gap은 증가추세가 나타남
 - 이는 상속과 증여의 과세체계 및 공제제도가 동일한 상황에서 자산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과세대상자와 과세가액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무신고자 수와 무신고자 결정세액 증가와 관련이 있음

- 2021년 상속세의 무신고 Tax Gap은 595억원이며 이는 2016년과 비교하면 38.8% 증가한 수준임
 - 상속세의 무신고 Tax Gap은 연평균 33.3억원 증가함
- 2021년 증여세의 무신고 Tax Gap은 3,473억원이며 이는 2016년과 비교하면 27.2% 증가한 수준임
 - 증여세의 무신고 Tax Gap은 연평균 171.3억원 증가함
- 2021년 상속세 1인당 무신고 Tax Gap은 5,600만원이며, 이는 2016년의 경우와 비교하여 1,000만원 증가하였고, 증여의 경우에는 2021년 1인당 무신고 Tax Gap은 1,100만원이고 이는 2016년의 경우와 비교하여 40만원 감소한 수준임
 - 증여의 경우, 수증자 수 증가속도가 증여금액 증가속도보다 더 빠르게 나타남
 - 상속세의 1인당 무신고 Tax Gap은 연평균 210만원 증가하였고, 증여세의 1인당 무신고 Tax Gap은 연평균 10만원 감소함

〈표 IV-1〉 무신고 Tax G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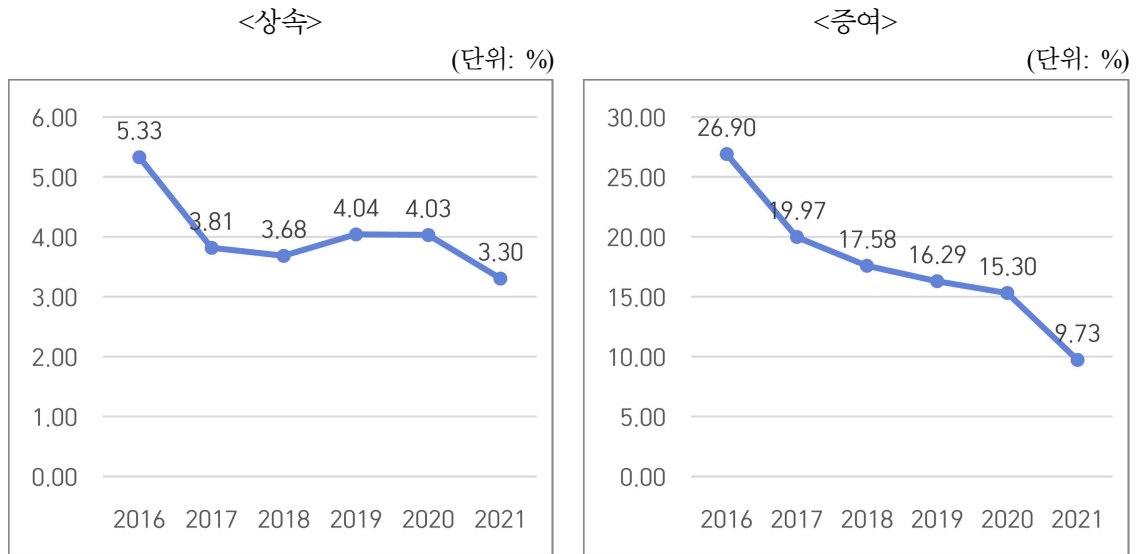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연도	무신고자	무신고자 결정세액	1인당 무신고자 결정세액
상속	2016	934	42,898	45.9
	2017	727	33,750	46.4
	2018	888	36,200	40.8
	2019	920	45,930	49.9
	2020	1,007	53,915	53.5
	2021	1,060	59,525	56.2
	연평균	923	45,370	49.2
증여	2016	27,682	314,794	11.4
	2017	26,478	340,652	12.9
	2018	29,467	342,640	11.6
	2019	30,709	337,104	11.0
	2020	31,636	348,390	11.0
	2021	36,439	400,446	11.0
	연평균	30,402	347,338	11.4

자료: 국세청의 상속세와 증여세 결정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총결정세액 대비 무신고 Tax Gap 비율은 하락추세를 보임
 - 증여의 무신고 Tax Gap 비율은 상속의 경우와 비교하여 평균적으로 13.6%p 큼
 - 상속의 2021년 무신고 Tax Gap 비율은 3.30이며, 이는 2016년의 경우와 비교하여 2.03%p 감소함
 - 증여의 2021년 무신고 Tax Gap 비율은 9.73이며, 이는 2016년의 경우와 비교하여 14.15%p 감소함
 - 증여의 무신고 Tax Gap 비율 감소 속도는 상속의 경우와 비교하여 더 빠름

[그림 IV-6] 무신고 Tax Gap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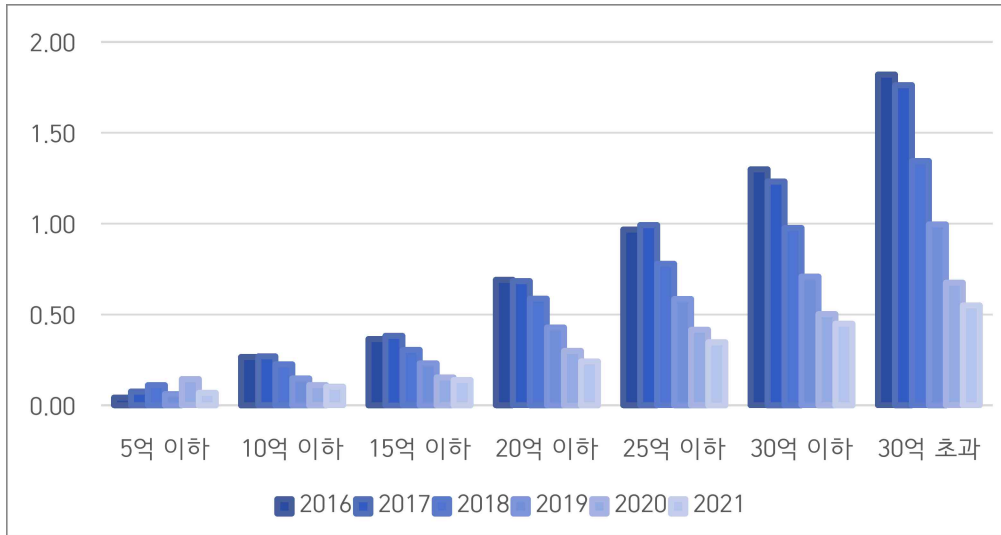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의 상속세와 증여세 결정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2016~2021년 기간에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 혜택은 감소하고 있으며, 동 기간에 무신고율과 무신고 Tax Gap 비율 역시 감소함
 - 상속과 증여에 대한 신고세액공제와 무신고율 및 무신고 Tax Gap 비율 간의 음(-)의 상관관계가 아닌 양(+)의 상관관계가 관찰됨
 - 이 결과는 신고세액공제 축소가 무신고율과 무신고 Tax Gap 비율 증가와 관련 없음을 보여줌
- 상속 신고세액공제에 의한 성실신고 기준 실효세율 감소율을 과세가액별로 살펴보면, 과세가액 5억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세액공제에 의한 실효세율 감소율은 하락추세를 보임

- 과세가액 규모가 클수록 신고세액공제에 의한 실효세율 감소율은 크게 나타남
- 과세가액 5억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과세가액 구간에서 실효세율 감소율은 매년 감소하며, 그 감소폭은 과세가액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남
 - 2016년 실효세율 감소율이 클수록 2021년과 2016년의 실효세율 감소율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남
 - 즉, 시간이 지날수록 과세가액 증가에 따른 실효세율 감소율 증가폭이 작아짐
- 이 결과는 신고세액공제율이 10%에서 3%로 감소하면서 과세가액이 높은 집단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함을 보여줌
- 과세가액 5억원 이하 집단은 다른 과세가액 집단과 비교하여 과세상 다른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실효세율 감소율 추세가 다소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 일반적으로 상속세 과세시작점은 일괄공제 제도로 인해 5억원임
 - 적용대상은 거주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임
 -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경우는 상속인이 일괄공제 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니면서 이를 정확하게 알고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임
 - 즉, 일괄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사람 중 적용대상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할 경우 무신고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사망 등의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후순위에 있는 친척이 상속을 받는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모를 경우 무신고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실효세율 감소율은 과세가액 대비 [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율] 비율을 의미하므로 신고세액공제율이 낮아지는 경우라도 과세가액 대비 산출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의 세부담 감소 기여 수준이 증가할 수 있음

[그림 IV-7] 상속 신고세액공제로 인한 실효세율 감소율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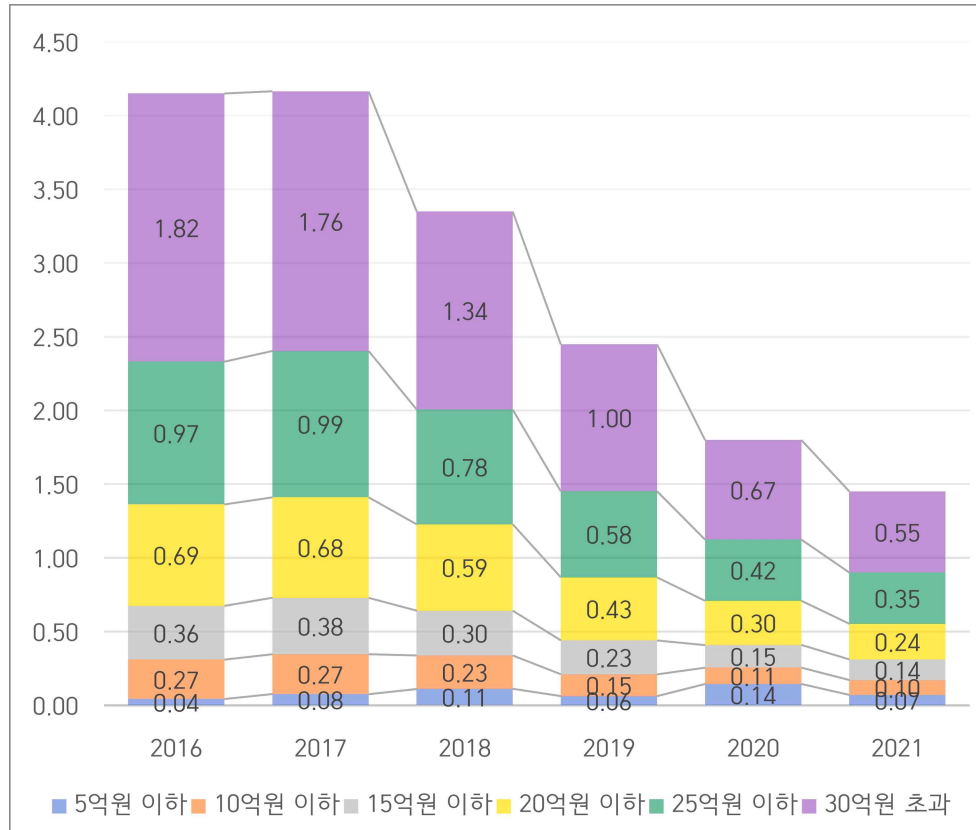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국세청 상속세 결정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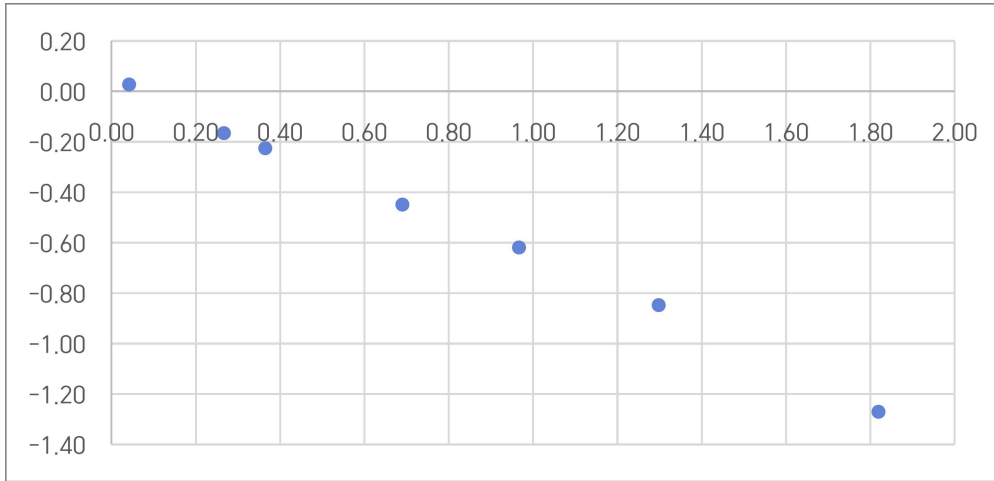
[그림 IV-8] 상속 신고세액공제로 인한 실효세율 감소율 2

(단위: %)



자료: 국세청 상속세 결정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IV-9] 상속 신고세액공제로 인한 2016년 실효세율 감소율과
2021년과 2016년의 실효세율 감소율 차이 간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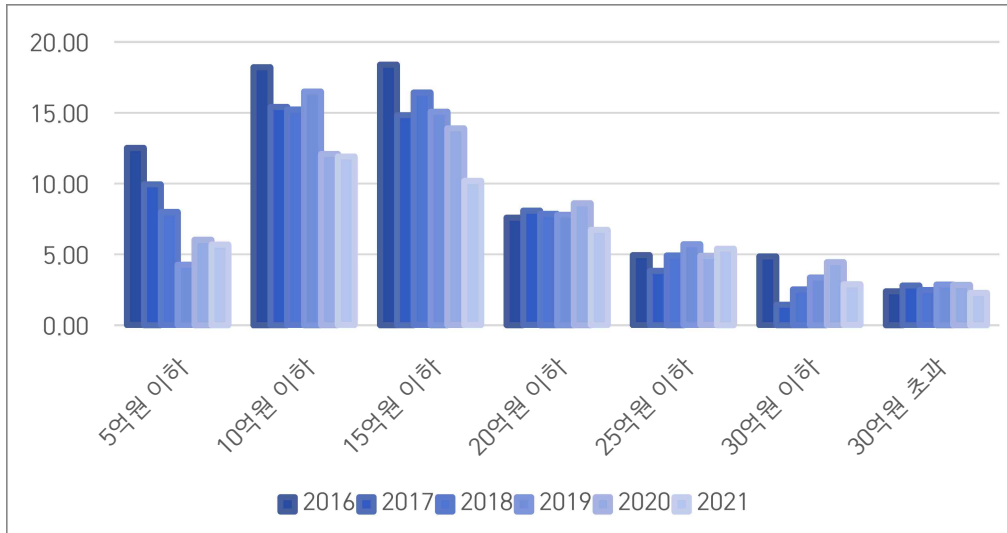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상속세 결정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상속에 대한 무신고율은 과세가액 20억~25억원 이하 집단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 추세를 보임
 - 대체로 과세가액이 클수록 실효세율 감소율 감소폭은 크고, 무신고율은 낮은 경향이 나타남
 - 상속 과세가액 10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과세가액과 무신고율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10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음(-)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남
 - 상속 과세가액 20~25억원에서 무신고율 증가 추세가 관찰됨
 - 2021년 무신고율은 5.4%이며, 이는 2016년의 경우와 비교하여 0.45%p 증가한 수준임
 - 무신고율은 연평균 0.09%p 증가함
 - 다른 과세가액 구간에서는 무신고율의 감소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남
 - 특히 2016~2021년 기간에 과세가액이 낮을수록 무신고율 감소율이 대체로 더 크게 나타남
 - 과세가액 15억원 이하 구간에서 평균적으로 1.11%p 감소하였고, 20억~25억원 구간을 제외한 과세가액 15억원 초과 구간에서 무신고율 감소율은 평균적으로 0.21%p 감소함

[그림 IV-10] 상속에 대한 무신고율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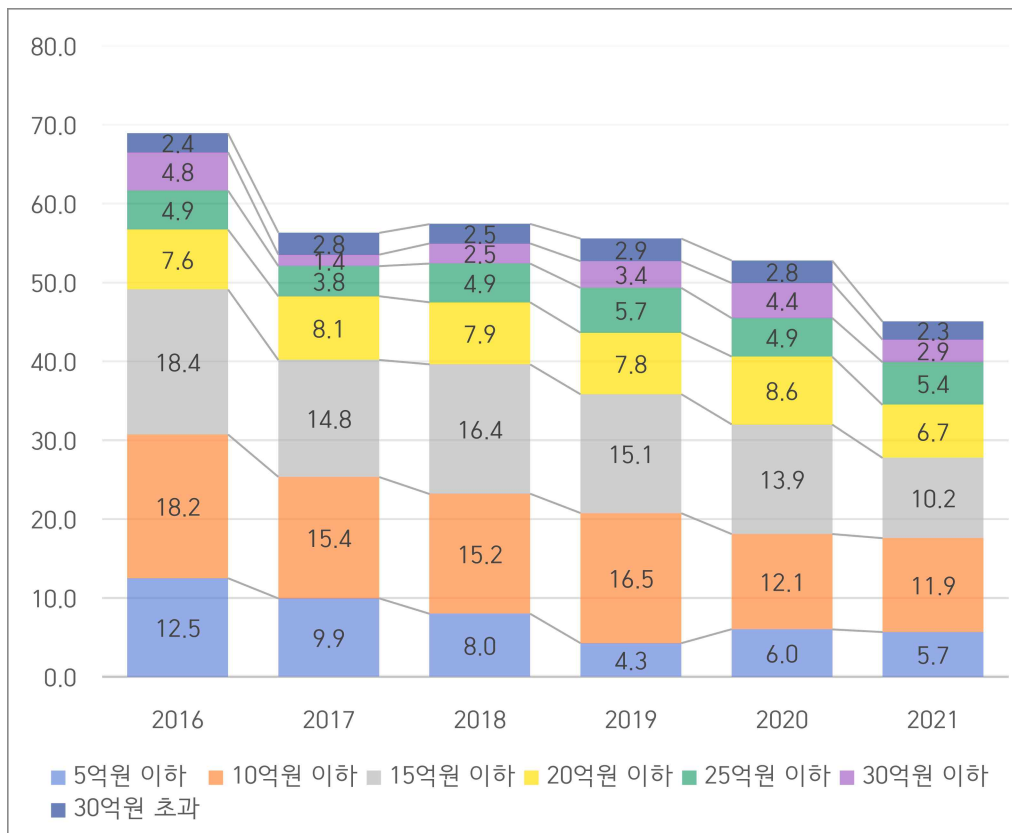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국세청 상속세 결정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IV-11] 상속에 대한 무신고율 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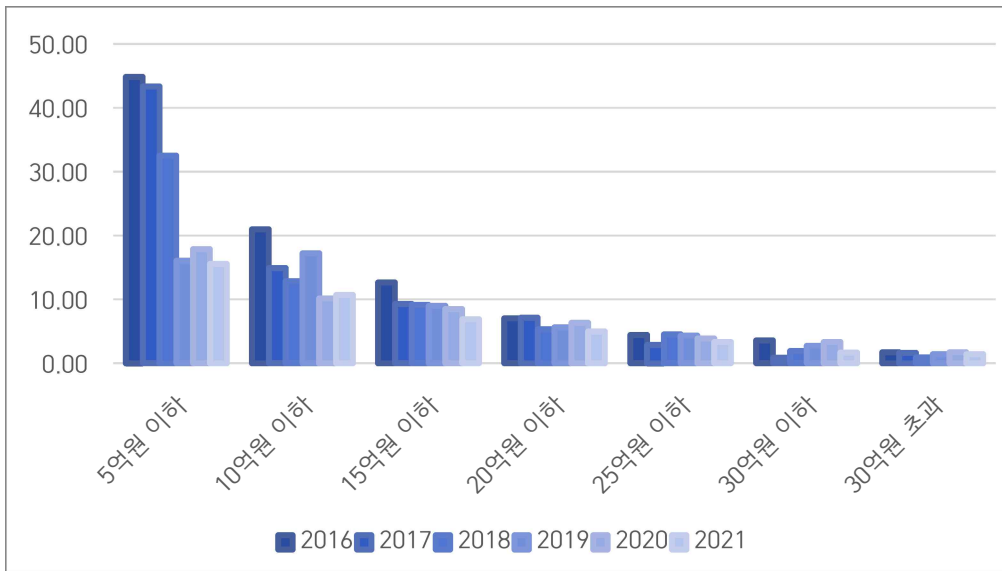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상속세 결정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상속 과세가액 구간에 상관없이 무신고 Tax Gap 비율은 모두 하락추세를 보임
 - 과세가액이 높을수록 무신고 Tax Gap 비율이 낮은 경향이 있음
 - 2021년 기준 5억원 이하 무신고 Tax Gap 비율은 15.56%이고, 30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43%p임
 - 대체로 과세가액이 낮을수록 2016~2021년 기간에 Tax Gap 비율 감소폭이 크게 나타남
 - Tax Gap 연평균 감소율은 5억원 이하의 경우 5.86%p로 가장 높음
 - 5억~10억원 이하의 Tax Gap 연평균 감소율이 2.06%p이며, 10억~15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1.16%p임
 - 그 외 다른 과세가액 구간에서는 Tax Gap 연평균 감소율이 1%p보다 작게 나타남

[그림 IV-12] 상속에 대한 Tax Gap 비율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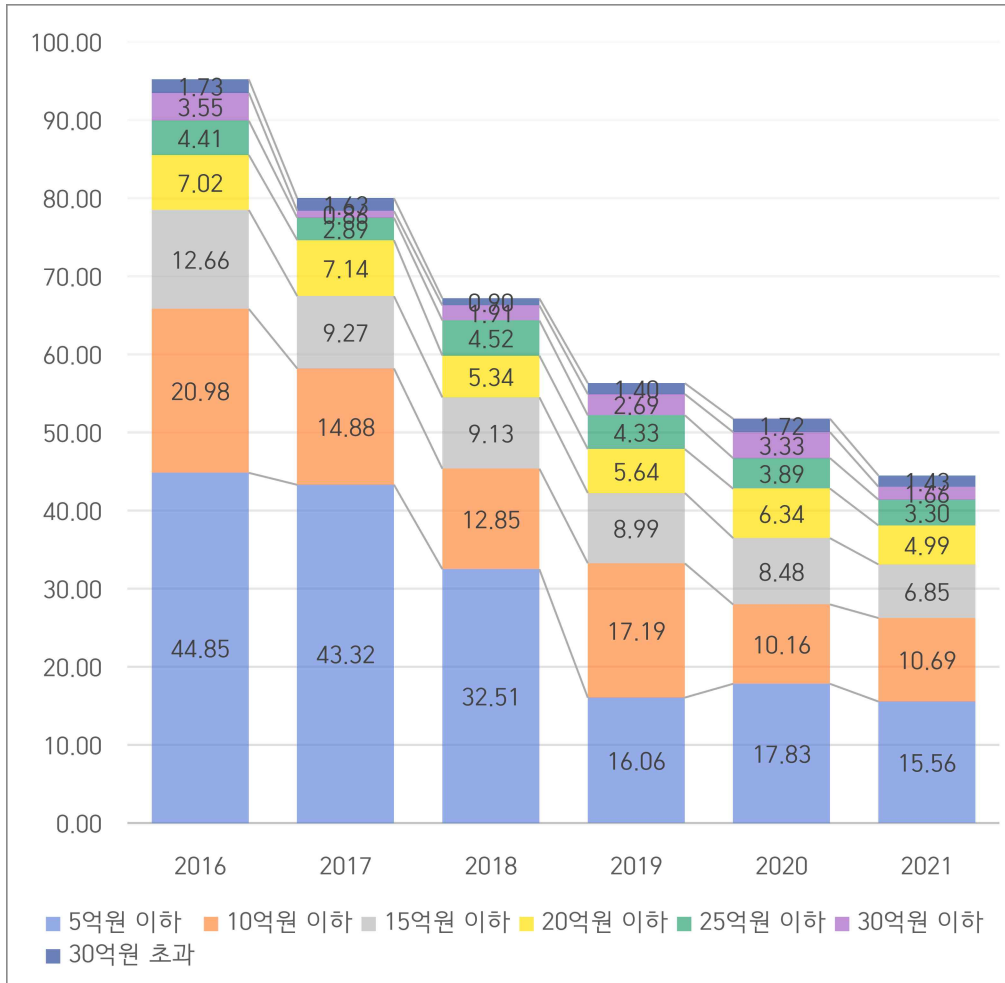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국세청 상속세 결정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IV-13] 상속에 대한 Tax Gap 비율 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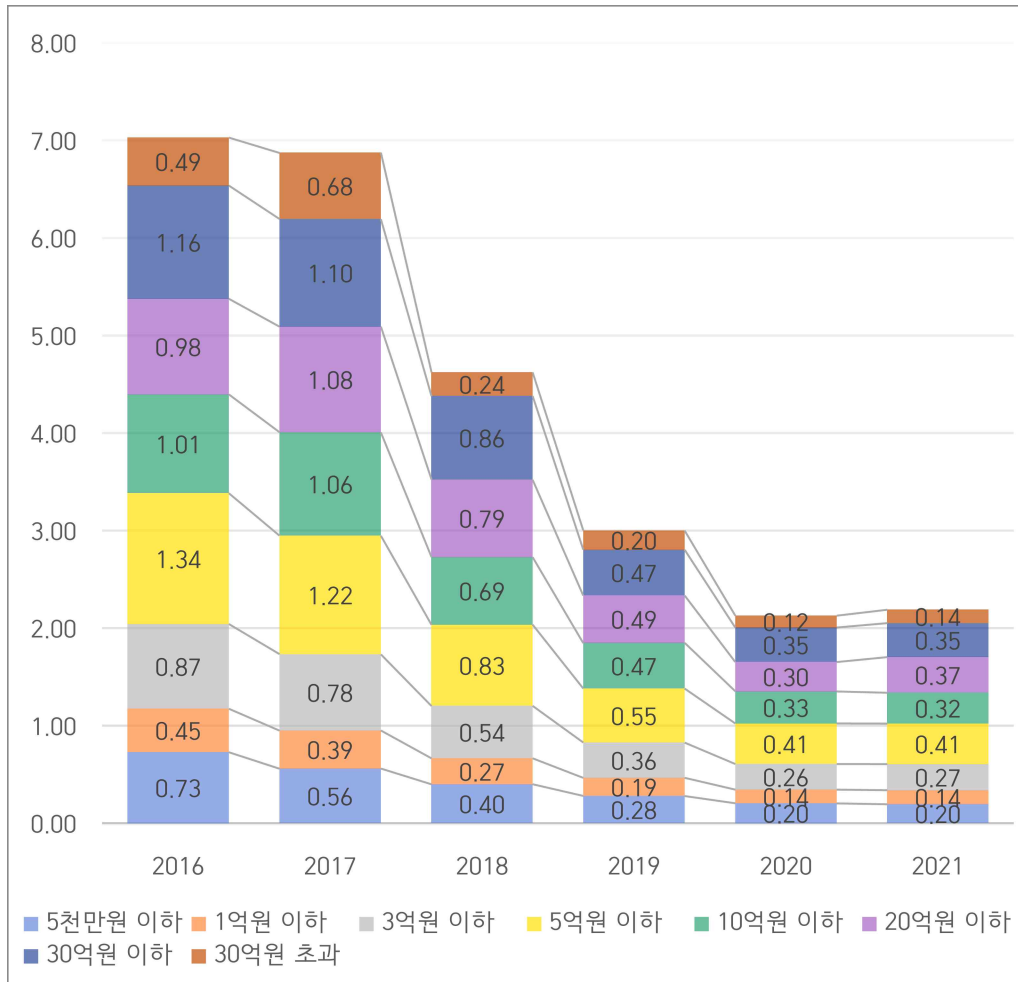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상속세 결정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증여 신고세액공제에 의한 성실신고 기준 실효세율 감소율을 과세가액별로 살펴 보면, 모든 과세가액 구간에서 실효세율 감소율은 하락추세를 보임
 - 과세가액 규모와 실효세율 감소율 간의 상관관계는 역U자형 모양을 가짐
 - 과세가액 3억~5억원에서 실효세율 감소율이 가장 크고, 이를 기점으로 과세가액이 클수록 실효세율 감소율이 감소함
 - 대체로 2016년 실효세율 감소율이 큰 과세가액 구간에서 실효세율 감소율 감소폭 역시 크게 나타남
 - 2016년 실효세율 감소율이 클수록 2021년과 2016년의 실효세율 감소율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남

- 신고세액공제 혜택이 컸던 집단일수록 신고세액공제 축소로 인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임

[그림 IV-14] 증여 신고세액공제에 의한 실효세율 감소율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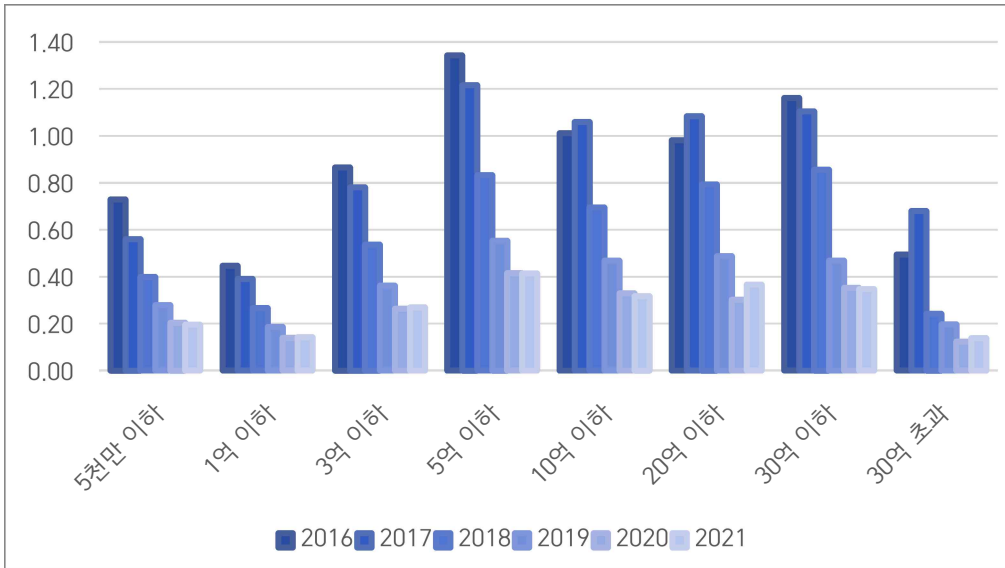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국세청 상속세 결정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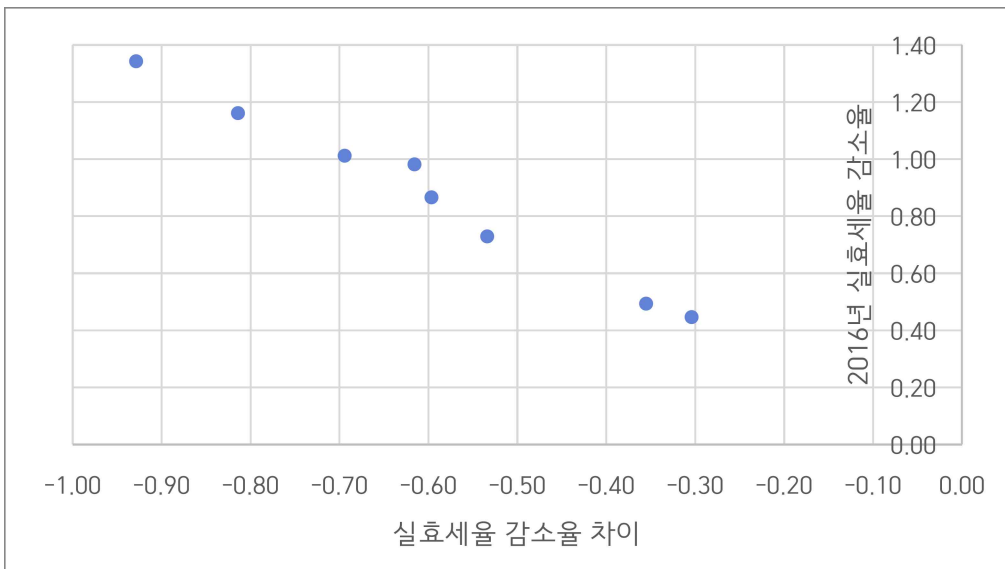
[그림 IV-15] 증여 신고세액공제에 의한 실효세율 감소율 2

(단위: %)



자료: 국세청 상속세 결정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IV-16] 신고세액공제로 인한 2016년 실효세율 감소율과 2021년과 2016년의 실효세율 감소율 차이 간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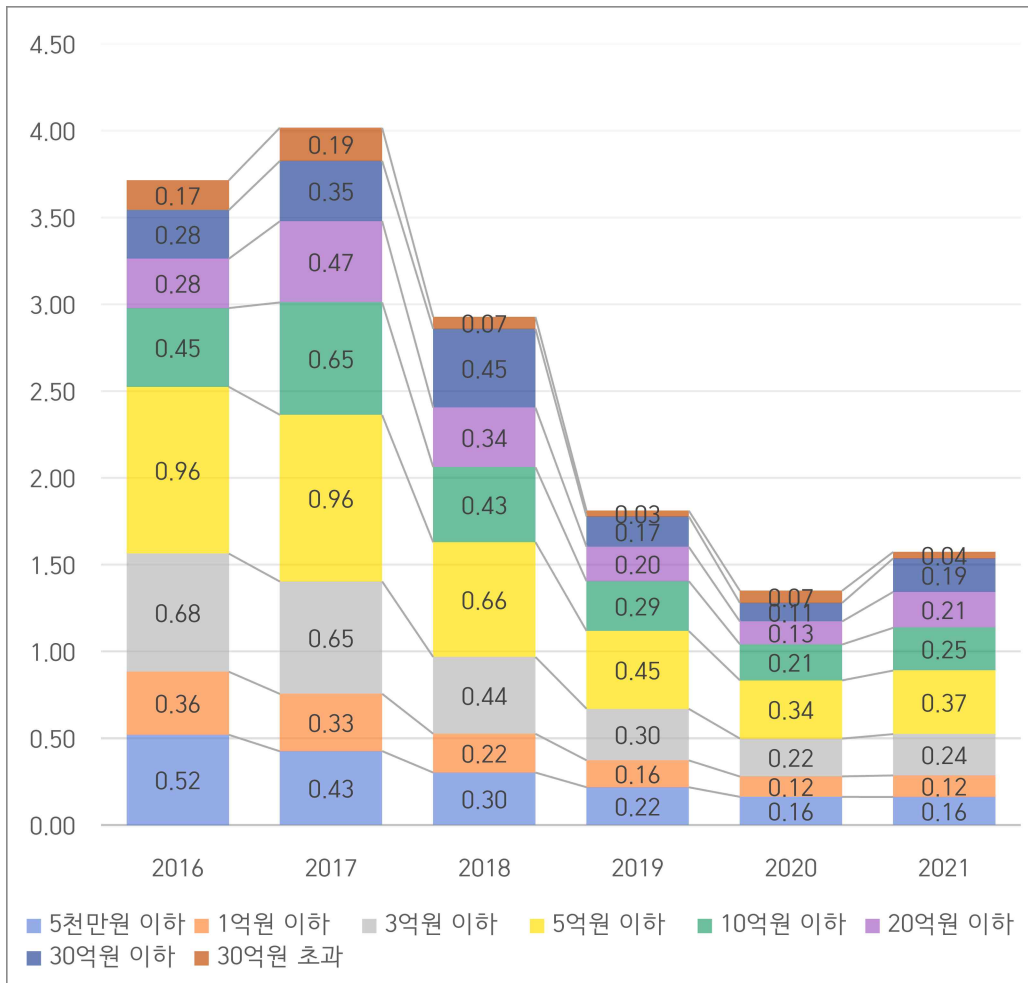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상속세 결정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증여에 대한 무신고율은 모든 과세가액 구간에서 하락추세를 보임
 - 실효세율 감소율이 높고, 2016~2021년 기간에 그 감소폭이 큰 과세가액 구간에서 무신고율이 낮게 나타남
 - 과세가액 3억~5억원 이하에서는 과세가액과 무신고율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3억~5억원 초과에서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
 - 2016~2021년 기간에 평균적으로 무신고율은 0.27%p 감소하였고, 과세가액 5억원 이하 구간의 무신고율 평균 감소폭이 그 초과 구간의 경우와 비교하여 더 큼

[그림 IV-17] 증여에 대한 무신고율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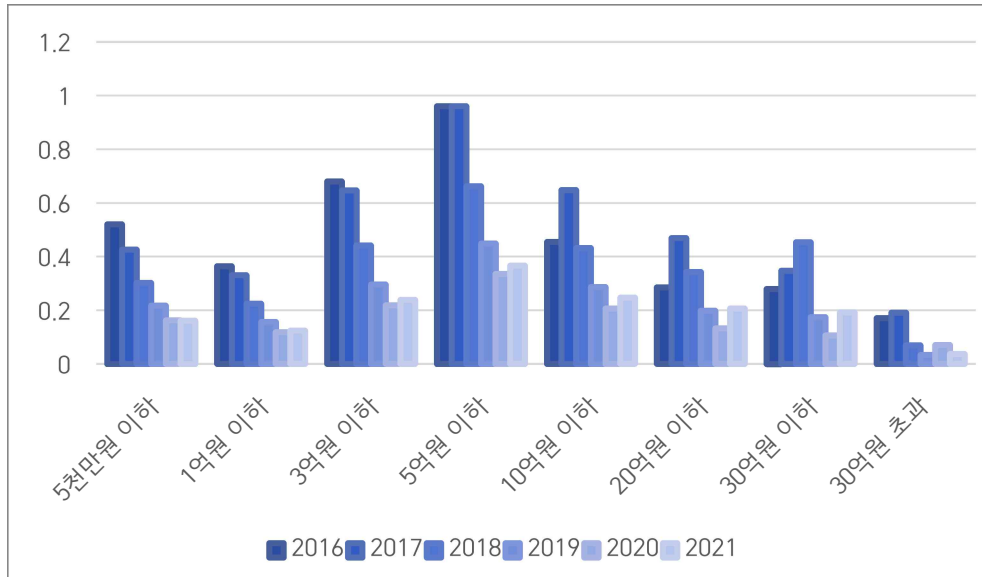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국세청 증여세 결정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IV-18] 증여에 대한 무신고율 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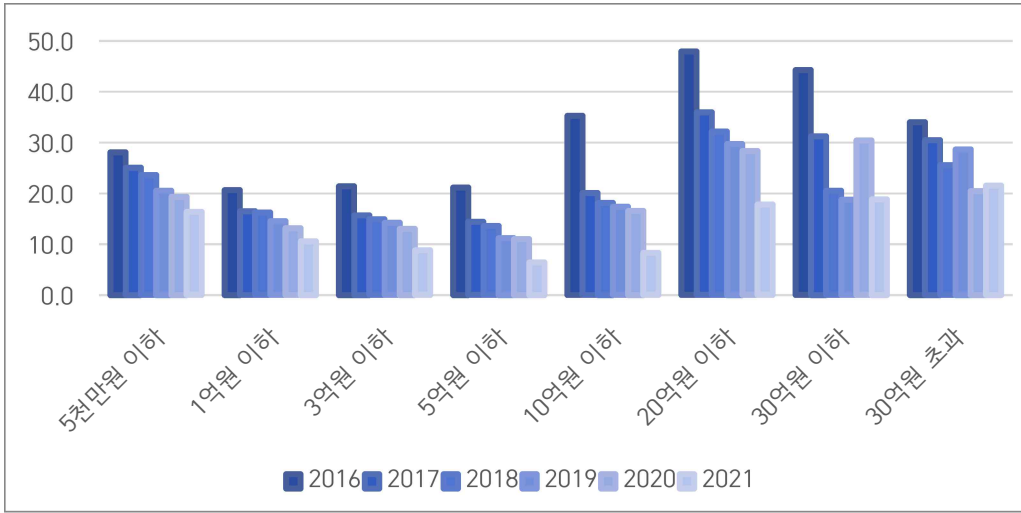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증여세 결정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증여 과세가액 구간에 상관없이 무신고 Tax Gap 비율은 모두 하락추세를 보임
 - 과세가액과 무신고 Tax Gap 비율은 과세가액 20억원까지는 U자형의 관계가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짐
 - 과세가액 5,000만원~1억원 구간의 무신고 Tax Gap 비율은 다른 과세가액의 경우와 비교하여 가장 낮음
 - 과세가액 10억~20억원에서 무신고 Tax Gap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대체로 Tax Gap 비율이 높았던 과세가액 구간에서 Tax Gap 비율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남
 - 과세가액 5,000만원~1억원 구간의 무신고 Tax Gap 비율 감소폭은 10.1%p로 다른 과세가액의 경우와 비교하여 가장 낮고, 10억~20억원 구간의 무신고 Tax Gap 비율 감소폭은 27%p로 가장 높음

[그림 IV-19] 증여에 대한 무신고 Tax Gap 비율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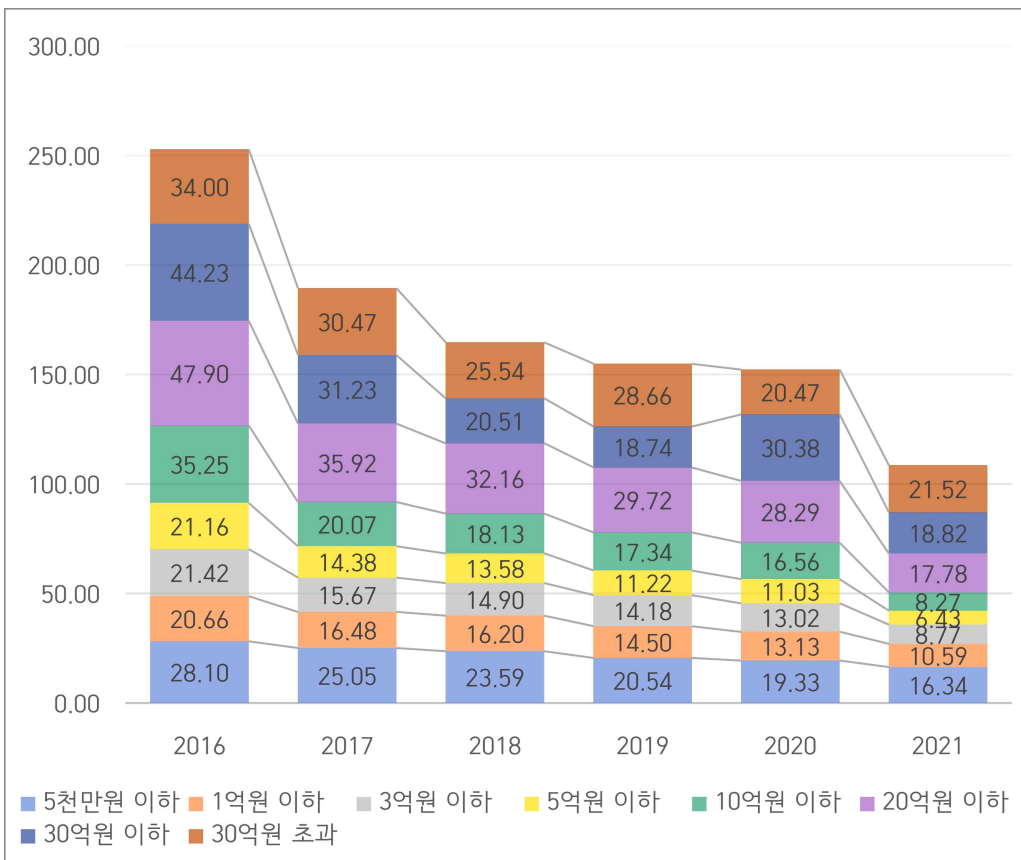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국세청 증여세 결정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IV-20] 증여에 대한 무신고 Tax Gap 비율 2

(단위: %)



자료: 국세청 상속세 결정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2016~2021년 기간에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 혜택은 감소하였으며, 그 감소폭이 큰 과세가액 구간에서 무신고율과 무신고 Tax Gap 비율 역시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남
 - 상속과 증여에 대한 신고세액공제가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신고율과 무신고 Tax Gap 비율은 오히려 더 감소함
 - 본 연구의 기초통계분석 결과는 신고세액공제 축소가 무신고율과 무신고 Tax Gap 비율 증가와 관련이 없음을 보여주며, 이는 본 연구의 가설이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줌

다. 회귀분석 결과

- 본 연구는 패널 회귀분석을 통해 신고세액공제의 축소가 무신고율·무신고 Tax Gap 비율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봄
 - 상속세 자료는 거의 전수자료이므로 상속세를 중심으로 인구학적 변수를 고려하여 실효세율과 무신고율 간의 관계를 살펴봄
 - 상속 결정자료는 거의 전수자료이지만 증여의 경우에는 전수자료라고 보기 힘들
 - 증여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중 국세청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납세자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이는 선택 편의(selection bias) 문제를 발생시킴
 - 본 연구는 신고세액공제 축소와 무신고율·무신고 Tax Gap 비율 간의 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지역별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고정효과 추정방법으로 신고세액공제 축소 효과를 살펴봄
 - 고정효과 추정방법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관측되지 않은 변수를 쉽게 통제할 수 있어 생략변수에 의한 편의를 줄이는 데 상당히 유용함
 - 다음의 회귀식을 고정효과 추정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함

$$y_{it} = c + \beta_1 etax_{it} + \beta_2 female_{it} + Age_{it}\gamma + m_i + t_t + \epsilon_{it} \quad \text{식 (1)}$$

- i : 17개의 시·도를 의미
- t : 연도를 의미
- y : 무신고율 또는 무신고 Tax Gap 비율
- $etax$: 상속세 실효세율
- $female$: 여성 집단 평균 비중을 의미

- Age: 65세 이하, 66~75세 이하, 76~85세 이하, 86~95세 이하, 96세 이상 집단 평균 비중을 의미
- m_i : 관측되지 않은 고정효과
- t : 연도별 더미변수
- ϵ : 오차항

□ 본 연구는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구변수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회귀방정식 (2)를 추정함

- 2016년 신고세액공제액에 각 연도 신고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신고세액공제 축소로 인한 실효세율 감소율 변화분 변수를 생성하여 도구변수로 사용함
- 신고세액공제율 변화는 실효세율에 영향을 주지만 외생적인 신고세액공제제도 변화는 무신고율과 관련이 없음
- 2016년 신고세액공제액을 기준으로 도구변수를 생성하는 이유는 제도 정책에 의한 변화만을 고려하기 위함임
 - 각 연도마다 과세가액 분포가 변화가 변하고 이는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어 신고세액공제액 변화에 영향을 줌
 - 본 연구의 도구변수에는 외생적인 제도 변화에 의한 실효세율 감소 기여분만 반영됨
 - 즉, 신고세액공제제도와 관련 없는 과세가액 분포 변화에 따른 산출세액 변화분은 도구변수에 반영되지 않음

□ 본 연구의 회귀분석 자료에 대한 기초통계는 <표 IV-1>에 제시된 바와 같음

- 무신고율은 평균적으로 14.7%이고, 무신고 Tax Gap 비율은 5.55%임
- 실효세율은 평균적으로 8.2%임
- 납세자 중 남자의 평균 비중은 73%이며, 각 연령 집단의 평균 비중은 9%에서 20% 비중 범위에 있음
 - 90세 초과 집단 평균 비중은 9%로 가장 낮고 66~75세 이하 집단 평균 비중은 20%로 가장 높음
- 성실신고 기준 평균 산출세액은 856억원이고, 평균 결정세액은 677억원이며 평균 과세가액은 6,787억원임

- 평균 신고세액공제는 37억원임
- 상속세 무신고 기준 평균 산출세액은 49억원이고, 평균 결정세액은 26억원이며 평균 과세가액은 596억원임

<표 IV-2> 기초통계량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종속변수					
무신고율(%)	102	14.7	6.07	3.70	37.66
무신고 TaxGap 비율(%)	102	5.55	3.00	0.77	17.20
관심 설명변수					
실효세율(%)	102	8.189422	1.46037	4.136832	12.21675
인구학적 설명변수					
연령					
65세 이하	102	0.19	0.04	0.11	0.36
75세 이하	102	0.20	0.04	0.11	0.32
80세 이하	102	0.18	0.04	0.12	0.42
85세 이하	102	0.19	0.04	0.06	0.28
90세 이하	102	0.14	0.04	0.04	0.27
90세 초과	102	0.09	0.04	0.00	0.19
성별					
남자	102	0.73	0.06	0.60	0.87
여자	102	0.27	0.06	0.13	0.40
실효세율 관련 기초통계					
성실신고 기준					
결정세액(백만원)	102	67,713	148,002	855	891,908
산출세액(백만원)	102	85,644	185,804	924	1,072,041
과세가액(백만원)	102	678,716	1,307,116	18,736	7,300,697
신고세액(백만원)	102	3,740	7,978	58	44,046
무신고 기준					
결정세액(백만원)	102	2,667	4,834	13	23,957
산출세액(백만원)	102	4,932	8,858	61	44,230
과세가액(백만원)	102	59,588	100,833	587	454,851

자료: 국세청의 상속세와 증여세 결정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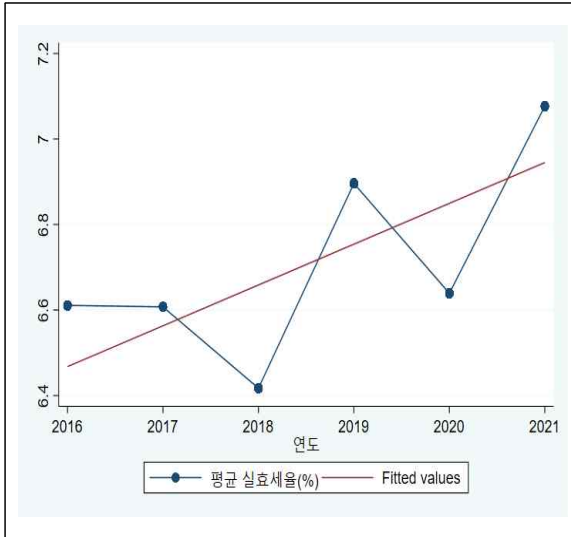
- 지역 패널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Pooled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함
 - 선형회귀모형(Linear regression model, 이하 LM)과 Probit 모형을 사용하여 실효세율과 무신고율 간의 관계를 살펴봄
 - Pooled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Pooled OLS와 Probit 모형을 추정함
 - 2016~2021년 기간 상속세 개별 납세자 자료이므로 매년 상속에 대한 납세자 집단이 다름
 - LM 회귀방정식: $Y_{it} = c + X_{it}\beta + \epsilon_{it}$ 식 (2)
 - i 는 각 연도 개별 납세자를 의미하고, t 는 연도를 의미함
 - c 는 상수를 의미함
 - X 는 남자 더미변수, 연령별 집단 더미변수, 지역 더미변수, 연도별 더미변수를 포함하는 벡터임
 - ϵ 는 오차항을 의미함
 - Probit 모형 회귀방정식: $P(Y=1) = \phi(c + X\beta)$
 - $\phi(\cdot)$ 는 표준정규분포의 누적분포함수를 의미함

- 선형회귀모형(LM)과 Probit 모형을 사용하여 상속세를 중심으로 실효세율과 무신고율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실효세율의 증가는 무신고율 감소와 통계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관계를 나타내는 추정치는 거의 0에 가까움
 - 신고세액공제 축소는 실효세율 증가와 관련이 있음
 - 기초통계를 살펴보면, 실효세율 증가는 무신고율 감소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줌
 - 평균을 중심으로 기초통계를 살펴보면, 평균 실효세율은 증가추세에 있고, 평균 무신고율은 감소추세에 있음
 - 평균 실효세율과 무신고율의 산포도를 살펴보면 두 변수 간 음(-)의 관계가 나타남
 - 회귀분석을 통해 인구학적 변수(나이, 지역, 성별)를 고려한 상황에서도 실효세율과 무신고율 간 음(-)의 관계가 나타나지만, 이 관계를 나타내는 추정치는 0에 가까움
 - <표 IV-1>에 제시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 열에서 Pooled OLS 모형의 경우 실효세율 1% 증가는 무신고율 0.01% 감소와 관련이 있고 세 번째 열에 제시된 Probit 모형 한계효과 결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남

[그림 IV-21] 실패세율과 무신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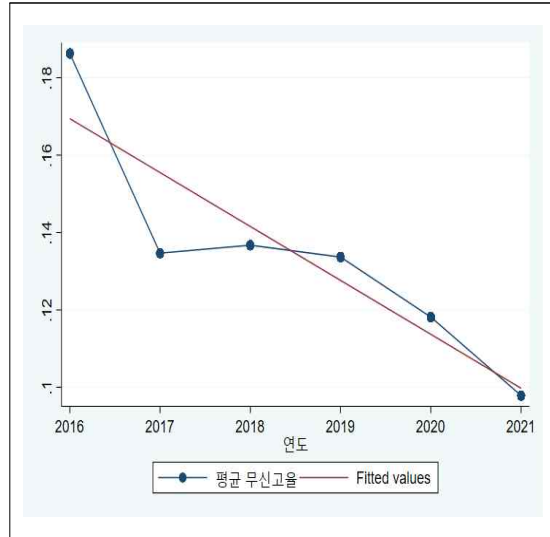
<평균 실패세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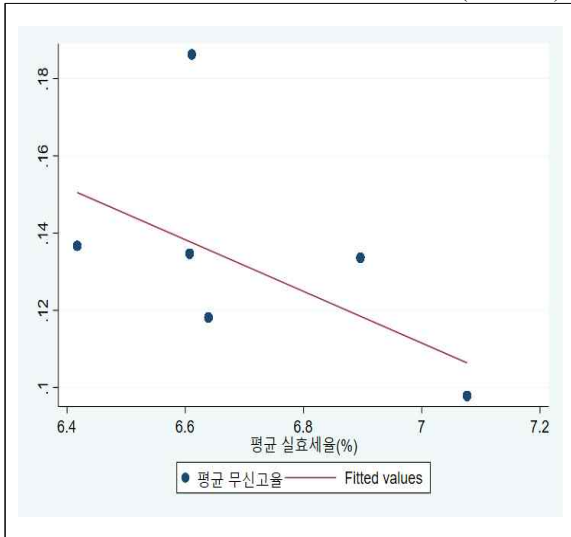
<무신고율>

(단위: 천명)



<실패세율과 무신고율>

(단위: %)



자료: 국세청 상속세 결정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IV-3> Pooled 패널자료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	(2)	(3)
VARIABLES	Pooled OLS 모형	Probit 모형	Probit 모형 한계효과
종속변수	무신고율(%)	무신고율(%)	무신고율(%)
실효세율(%)	-0.010*** (0.000)	-0.070*** (0.002)	-0.013*** (0.000)
남자 더미변수	0.008** (0.003)	0.039** (0.018)	0.007** (0.003)
66~75세 더미변수	-0.018*** (0.005)	-0.094*** (0.027)	-0.017*** (0.005)
76~80세 더미변수	-0.009 (0.005)	-0.046* (0.027)	-0.008* (0.005)
81~85세 더미변수	0.009* (0.005)	0.049* (0.026)	0.009* (0.005)
86~90세 더미변수	0.013** (0.006)	0.063** (0.028)	0.011** (0.005)
90세 초과 더미변수	0.025*** (0.006)	0.122*** (0.032)	0.022*** (0.006)
인천지역 더미변수	-0.017** (0.009)	-0.081* (0.047)	-0.015* (0.009)
경기지역 더미변수	-0.003 (0.004)	-0.010 (0.021)	-0.002 (0.004)
강원지역 더미변수	-0.037*** (0.011)	-0.188*** (0.065)	-0.035*** (0.012)
대전지역 더미변수	-0.024** (0.012)	-0.119* (0.061)	-0.022* (0.011)
충북지역 더미변수	0.017 (0.013)	0.072 (0.056)	0.013 (0.010)
충남지역 더미변수	0.024** (0.010)	0.097** (0.044)	0.018** (0.008)
세종지역 더미변수	-0.001 (0.024)	0.021 (0.115)	0.004 (0.021)
광주지역 더미변수	0.015 (0.015)	0.082 (0.067)	0.015 (0.012)
전북지역 더미변수	0.008 (0.014)	0.038 (0.064)	0.007 (0.012)
전남지역 더미변수	0.051*** (0.017)	0.226*** (0.067)	0.042*** (0.012)
대구지역 더미변수	0.005 (0.008)	0.034 (0.040)	0.006 (0.007)
경북지역 더미변수	-0.010 (0.010)	-0.045 (0.049)	-0.008 (0.009)
부산지역 더미변수	-0.027*** (0.007)	-0.139*** (0.039)	-0.025*** (0.007)
울산지역 더미변수	0.011 (0.013)	0.059 (0.060)	0.011 (0.011)

<표 IV-3>의 계속

	(1)	(2)	(3)
VARIABLES	Pooled OLS 모형	Probit 모형	Probit 모형 한계효과
종속변수	무신고율(%)	무신고율(%)	무신고율(%)
경남지역 더미변수	0.023** (0.010)	0.097** (0.042)	0.018** (0.008)
제주지역 더미변수	0.067*** (0.016)	0.283*** (0.059)	0.052*** (0.011)
2017년 더미변수	-0.051*** (0.007)	-0.228*** (0.031)	-0.042*** (0.006)
2018년 더미변수	-0.050*** (0.007)	-0.226*** (0.029)	-0.042*** (0.005)
2019년 더미변수	-0.047*** (0.007)	-0.210*** (0.029)	-0.039*** (0.005)
2020년 더미변수	-0.069*** (0.006)	-0.318*** (0.028)	-0.058*** (0.005)
2021년 더미변수	-0.082*** (0.006)	-0.401*** (0.027)	-0.074*** (0.005)
상수	0.244*** (0.007)	-0.546*** (0.033)	
Observations	43,086	43,086	43,086
R-squared	0.045		
Pseudo R-squared		0.0725	

주: 1. () 안은 강건성 표준오차를 의미함

2.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함을 보여줌

자료: 국세청의 상속세와 증여세 결정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무신고율에 대한 지역 패널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따른 실효세율 증가는 통계적으로 무신고율 증가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의 가설은 신고세액공제가 축소됨에 따라 무신고율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임
 - 인구학적 변수를 통제하고 도구변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 IV-3>의 첫 번째 열에 제시된 것처럼 실효세율 추정치가 0.82로 추정되며, 이는 실효세율 1%p 증가는 무신고율의 0.82%p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인구학적 변수를 통제하고 도구변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표 IV-3>의 두 번째 열에 제시된 것처럼, 실효세율 추정치가 0.56으로 추정되며, 이는 실효세율 1%p 증가는 무신고율의 0.56%p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결과적으로 신고세액공제 축소로 인한 실효세율 증가는 무신고율 증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더미변수를 살펴보면, 무신고율은 매년 평균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각 연도 더미변수 추정치는 2016년의 무신고율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보여줌
 - 연도별 더미변수의 추정치는 음(-)의 부호를 가지며, 절댓값 기준 추정치 크기는 2021년에 가까울수록 더 커지는 경향이 있음
 - 이는 2016년의 경우와 비교하여 매년 무신고율이 감소하였으며, 그 감소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체로 크게 나타남을 의미함

〈표 IV-4〉 무신고율에 대한 패널 회귀분석 결과

VARIABLES	(2) Fixed Effect 모형	(4) Fixed Effect IV 모형
종속변수	무신고율(%)	무신고율(%)
실효세율(%)	0.824 (0.827)	0.564 (1.617)
여자 더미변수	-15.375 (25.492)	-15.112 (25.953)
66~75세 더미변수	-8.915 (29.715)	-7.090 (28.197)
76~80세 더미변수	-18.249 (20.710)	-18.880 (22.036)
81~85세 더미변수	4.850 (27.639)	6.627 (27.722)
86~95세 더미변수	-0.888 (21.802)	0.077 (24.765)
95세 초과 더미변수	14.796 (33.902)	15.435 (33.741)
2017년 더미변수	-6.076** (2.472)	-6.185** (2.580)
2018년 더미변수	-7.333** (2.934)	-7.537** (3.008)
2019년 더미변수	-4.068 (3.060)	-4.120 (3.141)
2020년 더미변수	-8.466*** (2.324)	-8.628*** (2.628)
2021년 더미변수	-8.011*** (2.171)	-8.033*** (2.221)

<표 IV-4>의 계속

	(2)	(4)
VARIABLES	Fixed Effect 모형	Fixed Effect IV 모형
종속변수	무신고율(%)	무신고율(%)
상수	20.844 (17.608)	22.193 (20.549)
Observations	102	102
R-squared	0.370	

주: 1. () 안은 강건성 표준오차를 의미함

2.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함을 보여줌

자료: 국세청의 상속세와 증여세 결정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무신고 Tax Gap 비율에 대한 지역 패널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따른 실효세율 증가는 통계적으로 무신고 Tax Gap 비율 증가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의 가설은 신고세액공제가 축소됨에 따라 무신고 Tax Gap 비율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임
 - 인구학적 변수를 통제하고 도구변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 IV-4>의 첫 번째 열에 제시된 것처럼 실효세율 추정치가 0.084로 추정되며, 이는 실효세율 1%p 증가는 무신고 Tax Gap 비율의 0.08%p 감소와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지만 그 크기가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인구학적 변수를 통제하고 도구변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표 IV-4>의 두 번째 열에 제시된 것처럼, 실효세율 추정치가 실효세율 추정치가 0.987로 추정되며, 이는 실효세율 1%p 증가는 무신고 Tax Gap 비율의 0.99%p 감소와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결과적으로 신고세액공제 축소로 인한 실효세율 증가는 무신고 Tax Gap 비율 증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더미변수를 살펴보면, 무신고 Tax Gap 비율 역시 매년 평균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각 연도 더미변수 추정치는 2016년의 무신고 Tax Gap 비율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보여줌
 - 연도별 더미변수의 추정치는 음(-)의 부호를 가지며, 그 크기는 절댓값을 기준으로 0.05%~3.45%p 범위에 있음

<표 IV-5> 무신고 Tax Gap 비율에 대한 패널 회귀분석 결과

VARIABLES	(1) Fixed Effect 모형	(2) Fixed Effect IV 모형
종속변수	무신고율(%)	무신고율(%)
실효세율(%)	-0.084 (0.390)	-0.987 (0.637)
여자 더미변수	7.999 (7.583)	8.913 (7.369)
66~75세 더미변수	-20.359 (11.785)	-14.015 (10.981)
76~80세 더미변수	-21.101* (11.298)	-23.296* (12.034)
81~85세 더미변수	-5.416 (9.026)	0.763 (10.760)
86~95세 더미변수	-15.393 (14.254)	-12.037 (14.966)
95세 초과 더미변수	12.511 (17.911)	14.733 (19.073)
2017년 더미변수	-2.145** (0.745)	-2.524*** (0.853)
2018년 더미변수	-2.738** (1.043)	-3.449*** (1.306)
2019년 더미변수	0.128 (1.218)	-0.051 (1.487)
2020년 더미변수	-3.050** (1.289)	-3.612** (1.459)
2021년 더미변수	-2.011** (0.870)	-2.088** (0.992)
상수	15.808** (6.999)	20.500** (9.095)
Observations	102	102
R-squared	0.308	

주: 1. () 안은 강건성 표준오차를 의미함

2.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함을 보여줌

자료: 국세청의 상속세와 증여세 결정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3. 소결

- 본 연구는 기초통계분석과 패널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신고세액공제 축소가 무신고율과 무신고 Tax Gap 비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봄
 - 기초통계분석에서는 신고세액공제 축소와 무신고율 및 무신고 Tax Gap 비율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봄
 - 상속과 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결정자료를 사용하여 무신고율과 무신고 Tax Gap 비율을 산출하고 이들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봄
 - 상속세를 중심으로 Pooled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인구학적 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도 기초통계분석에서 관찰된 실효세율과 무신고율 간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 살펴봄
 - 지역 패널 회귀분석에서는 상속세를 중심으로 신고세액공제율의 연도별 외생적 변화를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실효세율과 무신고율·무신고 Tax Gap 비율 간의 관계를 추정함
 - 신고세액공제 축소로 실효세율이 증가함에 따라 무신고율·무신고 Tax Gap 비율이 증가하였는지를 살펴봄

- 기초통계분석에서는 상속·증여에 대한 신고세액공제의 세제혜택은 감소하였으나 무신고율과 무신고 Tax Gap 비율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함
 - 국세청의 상속 결정자료를 살펴보면, 2016~2021년 기간에 신고세액공제로 인한 실효세율 감소율은 하락추세에 있음
 - 동 기간에 신고세액공제율은 10%에서 3%로 단계적으로 하향조정됨
 - 신고세액공제율은 실효세율을 감소시키므로, 신고세액공제율 축소는 실효세율 증가, 즉 신고세액공제로 인한 실효세율 감소율의 감소와 관련이 있음
 - 하지만, 동 기간에 무신고율과 무신고 Tax Gap 비율은 감소추세를 보임
 - 과세가액 크기별로 살펴보면, 신고세액공제 축소로 실효세율 감소율이 크게 감소한 과세가액 구간에서 무신고율과 무신고 Tax Gap 비율 역시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남
 - 본 연구의 기초통계분석 결과는 신고세액공제 축소가 무신고율과 무신고 Tax Gap 비율 증가와 관련이 없음을 보여주며, 이는 본 연구의 가설이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줌

- Pooled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Pooled OLS와 Probit 모형을 추정한 결과 실효세율과 무신고율 간 음(-)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만, 그 크기는 0에 가까움
 - 인구학적 변수를 고려하여 실효세율과 무신고율 간 관계를 추정함
 - Pooled OLS 모형에 대한 실효세율 추정치는 -0.010이고 Probit 모형의 경우에는 -0.013임
 - 인구학적 변수를 고려할 경우 기초통계분석에서 제시된 실효세율과 무신고율 간 음(-)의 상관관계가 덜 뚜렷하게 나타남

- 지역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한 결과, 실효세율 증가는 무신고율·무신고 Tax Gap 비율 증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신고세액공제 축소 정책으로 인한 실효세율 변화분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함
 - 도구변수를 사용한 지역패널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실효세율 추정치에서 신고세액공제 축소로 인한 실효세율 증가는 무신고율·무신고 Tax Gap 비율 증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없음
 - 연도별 더미변수 추정치를 살펴보면, 2016년과 비교하여 무신고율·무신고 Tax Gap 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본 연구의 기초통계분석 및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신고세액공제의 축소는 무신고율 및 무신고 Tax Gap 비율 증가와 관련이 없으며, 이는 향후 신고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조세회피 행위가 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 상속의 경우에는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가 잘 구축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납세자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V. 요약 및 시사점



V. 요약 및 시사점

- 본 연구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평가함
- 과세 인프라 확충과 과세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속·증여세를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사실은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함
 - 최근 5년간³⁷⁾ 평균적인 상속·증여세 미신고 적발 건수는 약 2,000건이며 이에 대한 추정세액은 3,000억원 수준임
 - 2021년 상속·증여세 결정자료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무신고자 비중은 각각 8.7%와 14.1%임
- 상속·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신고세액공제와 유사함
 - 그러나 두 제도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음
 - 신고세액공제는 기한 내에 자진신고하면 세금의 일부를 감면하는 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일부를 산출세액에 가산함
 - 대다수의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제도와 상관없이 자진신고한다고 가정하면, 신고세액공제는 불성실가산세 제도보다 비용-효과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 과세인프라 확충, 개인의 납세의식 등 신고세액공제와 무관한 이유로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납세자들도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
- 현재 상속·증여세 외에 다른 세목은 자발신고 유도를 위한 신고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음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는 2011년 폐지되었으며, 전자신고 세액공제 및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는 전자세정 정착을 위한 제도로 보는 것이 적절

37) 2017~2021년

- 단, 상속·증여세의 경우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 등이 다른 세목과 다를 수 있음
- 효과성 분석에서는 상속과 증여에 대한 국세청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신고세액공제 축소 기간 동안 무신고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봄
 - 이론적으로 신고세액공제 감소가 납세자의 자진신고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하기 어려움
 - 실제 무신고 발견확률, 주관적 무신고 발견확률 등 다양한 요인이 납세자의 조세 순응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임
 -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신고세액공제율이 10%에서 3%로 인하되었는데, 해당 기간 무신고율의 변화를 살펴봄
 - 무신고율은 총피상속인 대비 무신고자 비율을 의미하며,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한 경우를 무신고로 간주함
 - 분석 결과 신고세액공제 축소가 일어난 기간에 상속세와 증여세의 무신고율은 오히려 감소함
 - 증여세에 대한 무신고율 감소폭이 상속세의 경우보다 더 큼
 - 신고세액공제의 자진신고 유인효과가 크지 않으며, 과세 인프라 확충 등으로 무신고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한계로 인하여 해석에 유의해야 함
 - 과세자료에 존재하지 않는 무신고자가 존재할 수 있으며, 특히 증여세 자료의 경우 표본 편향이 클 것으로 보임
 - 고정효과 모형 등 회귀분석을 하였지만, 외생적인 변이를 활용하지 않아서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참고문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_____,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2020. 1. 1.부터 가전제품 소매업 등 8개 업종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보도자료, 2019. 12. 19.
- _____,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꼭 챙기세요!」, 보도자료, 2010. 1. 21.
- 국회예산정책처, 『현금영수증제도 평가 및 향후 개선과제』, 2005.
- 권성오,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개인사업자의 납세행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김유찬·이유향, 『주요국의 조세제도-독일편』, 2004.
- 김재진,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제도에 관한 소고』, 한국조세연구원, 2012.
- 김재진·황국재,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방법 및 적정금액 산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김종민, 「법인세 감세로 구멍난 세수, 소득세로 메웠다」, 김종민 의원실 보도자료, 2017. 3.
- 성명재, 「부가가치세의 부문별 실효세율, 면세의 누적효과 추정 및 면세 개선방안연구」, 『세무학 연구』, 제30권 제3호, 2013, pp. 189~223.
- 신영임·강민지,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 및 탈세규모의 추정』, 국회예산정책처, 2014.
- 오종현·강성훈, 『상속·증여세 과세·공제체계 개선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기획재정부, 2017.
- 이데일리, 「(현금영수증 리베이트) ① 세금이 샌다…구멍은 어디?」, 2020. 10. 1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95926593134232&mediaCodeNo=257>, 검색일자: 2020. 6. 22.
- 이태석 외,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과세특례』, 2016년도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7.
- 유한옥, 『재정안정화를 위한 소득과약체계 정비방안-소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2008.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각 연도.
- 현진권·김정훈, 『정보화 시대의 조세행정 발전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2.

- Choi, J. P., and M. Thum, “Corruption and the shadow economy,”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46(3), 2005, pp. 817~836.
- Cobham, A., “Tax evasion, tax avoidance and development finance,” *Queen Elizabeth House, Série documents de travail*, 129, 2005, pp. 1~20.
- Farhi, E. and I. Werning, “Progressive estate tax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5(2), 2010, pp. 635~673.
- _____, “Estate taxation with altruism heterogeneity,” *American Economic Review*, 103(3), 2013, pp. 489~495.
- Fuest, C., and N. Riedel, “Tax evasion, tax avoidance and tax expenditures in developing countri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Report prepared for the UK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DFID), 2009.
- Ilan, B., “Taxing Cash,” *Columbia Journal of Tax Law*, 4(65), 2012, pp. 65~93.
- Kahneman, Daniel and Amos Tversky,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47(2), 1979, pp. 263~292.
- Kopczuk, Wojciech, and Joel Slemrod, “The impact of the estate tax on the wealth accumulation and avoidance behavior of donor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00.
- Piketty, T. and E. Saez, “A theory of optimal inheritance taxation,” *Econometrica*, 81(5), 2013, pp. 1851~1886.
- Slemrod, Joel, “Tax compliance and enforcement,”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57(4), 2019, pp. 904~954.
- Spiro, P. S., “Monetary estimates of the underground economy: A critical evaluation,”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29(Special Issue), 1996, pp. 171~175.
- Tversky, Amos, and Daniel Kahneman, “Loss aversion in riskless choice: A reference-dependent model,”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6(4), 1991, pp. 1039~1061.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최종검색일자: 2020. 7.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최종검색일자: 2020. 7. 15.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 최종검색일자: 2020. 6. 22.

삼일아이닷컴, <http://www.samili.com>, 최종검색일자: 2020. 6. 22.

영국 정부, “Inheritance Tax thresholds and interest rate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ates-and-allowances-inheritance-tax-thresholds-and-interest-rates/inheritance-tax-thresholds-and-interest-rates>, 검색일자: 2023. 4. 11.

IRS, “Failure to File Penalty,” <https://www.irs.gov/payments/failure-to-file-penalty>, 검색일자: 2023. 4. 3.

OECD Revenue Statistics, <https://stats.oecd.org/>, 검색일자: 2023. 6. 1.

부 록



부록

1. 상속·증여세 납세의무

가. 상속세 납부의무³⁸⁾

-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인 개인
 - 상속받는 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총상속세액을 각자의 상속지분으로 나누어 상속인 각자가 납부의무를 지며,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짐

-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되,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된 상속세 중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해야 함

<부록 표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 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부록 표 1>의 계속

-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 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검색일자: 2023. 2. 23.

나. 증여세 납부의무³⁹⁾

- 수증자는 다음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납세의무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증여자가 거주자인지 아니면 비거주자인지는 구별할 필요가 없음
 -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소재가 국내인지 국외인지를 불문하고 증여재산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무제한 납세의무)
 -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제한납세의무)

- (영리법인의 납세의무) 영리법인은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인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음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
 - ①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45조의3)
 - ②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45조의4)
 - ③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45조의5)

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이에 포함되지 않는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따라서 증여세를 과세하여도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고 이외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
- (법인 아닌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의 납세의무)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그 외의 경우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과세함
- (증여세의 면제) 다음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5조)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제36조)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7조)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1조의4)
- (연대납부의무)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나 다음의 경우 증여자도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자가 됨
 - ①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 ②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 ③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부록 표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부록 표 2〉의 계속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특수관계법인과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특정법인과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까지 또는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의2, 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초과매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까지, 제4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2조의2(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4. 삭제
 - ⑦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부록 표 2〉의 계속

⑧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2. 제1호 외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⑨ 실제소유자가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증여세·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인 실제소유자의 증여세·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검색일자: 2023. 2. 23.

2. 상속·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⁴⁰⁾

가. 상속세 과세가액⁴¹⁾ 및 과세표준⁴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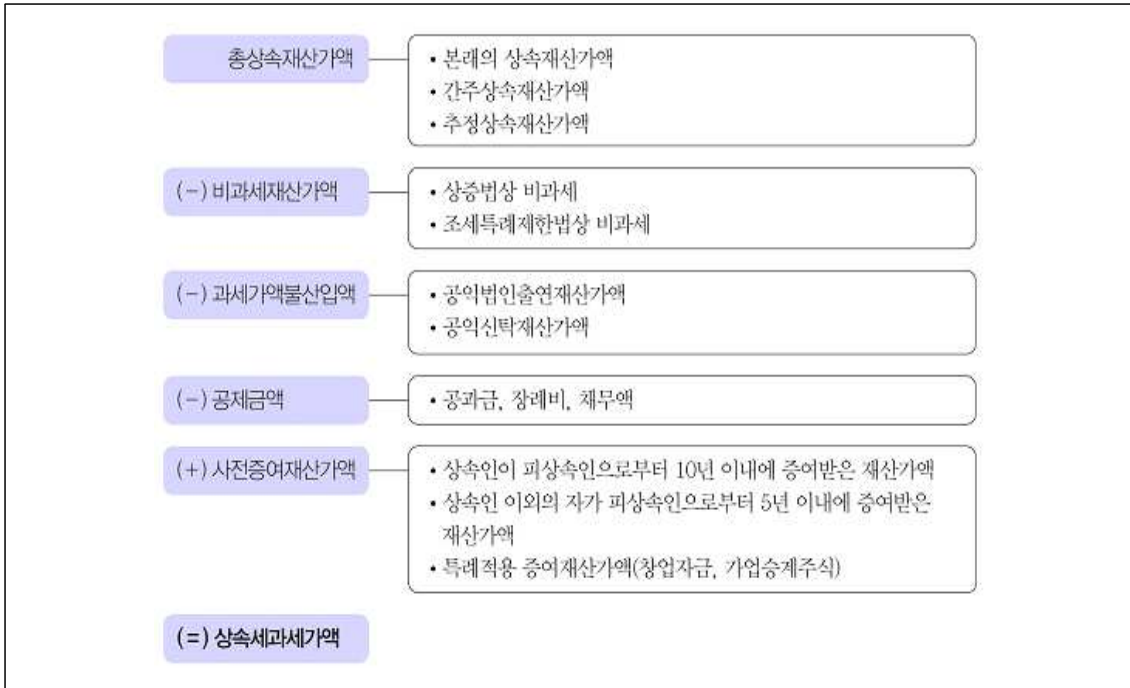
- 상속세 과세가액이란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화폐가치로 평가한 금전적 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인 총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세 비과세 항목과 과세가액 불산입 항목의 재산을 차감하고 공과금, 장례비, 채무를 공제한 후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 내에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함
 - 단,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 법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봄

40)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삼일아이닷컴 및 텍스넷 조문별 해설을 참고하여 작성
(국세청, <https://www.nts.go.kr>; 삼일아이닷컴, https://www.samili.com/tax/jomunhaesul/explain_tax.asp?code=52-20&spos=#content_body; 텍스넷, http://www.taxnet.co.kr/sub/law/tax_haesul/jo_haesul.asp?nN=1&sN=4&tN=1, 검색일자: 2023. 3. 6.)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제1항

[부록 그림 1]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자료: 텍스넷, http://www.taxnet.co.kr/sub/law/window/tax_jo_haesul.asp, 검색일자: 2023. 3. 6.

<부록 표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 ③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48조제1항(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 제52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및 제52조의2제1항(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검색일자: 2023. 3. 6.

- 상속세 과세가액이 확정되면 여러 가지 상속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함
 - (기초공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피상속인별로 공제되는 일괄금액으로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함

- (가업상속공제) 중소기업의 육성·장려정책의 일환으로 피상속인의 가업이 후세에 이어질 수 있도록 상속인의 가업상속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가업의 요건, 피상속인의 요건, 상속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부록 표 4〉 가업상속공제 요건

구분	내용
가업의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업의 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② 대통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일 것 ③ 대통령이 정하는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 금액이 3,000억원 미만일 것
피상속인의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일 것 ②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또는 10년 이상의 기간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로 재직할 것 ③ 피상속인은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거래소 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최대주주일 것
상속인의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속개시일 현재 10세 이상인 상속인일 것 ②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일 것 ③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
납부능력의 요건	<p>다음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배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견기업일 것 ②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가액 >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 × 2)

자료: 텍스넷, http://www.taxnet.co.kr/sub/law/window/tax_jo_haesul.asp, 검색일자: 2023. 3. 6.

- (영농상속공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공동경영에 의해 형성된 재산인 농지 등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고 영농상속인에 대하여는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어민의 경제활동을 지원⁴³⁾

43)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는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함

〈부록 표 5〉 영농상속공제 요건

구분	내용
영농재산의 요건	다음의 영농재산 중 하나에 해당할 것 ①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② 「초지법」의 규정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③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립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산림유전 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 ④ 「어선법」의 규정에 의한 어선 ⑤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는 제외) ⑥ 농업용 등으로 설치하고 창고 등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등기된 건축물과 부속토지
피상속인의 요건	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일 것 ②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피상속인일 것 ③ 실질적으로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할 수 있는 곳에 거주한 피상속인일 것 ④ 영농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상속인의 요건	① 영농·영어 및 임업 후계자인 상속인일 것 ② 상속인이 영농·영어 및 임업 후계자가 아닌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상속인일 것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상속인일 것 다. 실질적으로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할 수 있는 곳에 거주하는 상속인일 것 ③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을 것 ④ 영농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자료: 텍스넷, http://www.taxnet.co.kr/sub/law/window/tax_jo_haesul.asp, 검색일자: 2023. 3. 6.

(배우자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재산 가액 중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당해 순금융재산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록 표 6〉 기타 인적공제 공제요건 및 공제액

구분	상속공제
자녀공제	자녀수 ×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수 × 1인당 1,000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함
연로자공제	연로자수 × 1인당 5,000만원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에 한함
장애인공제	장애인수 × 1인당 1,000만원 × 기대여명 연수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기대여명 연수는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

주: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되며, 장애인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공제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함

자료: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검색일자: 2023. 3. 6.

- (일괄공제) 상속인 및 그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에 관계없이 상속인의 상속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 5억원의 상속공제를 보장하는 제도
- (금융재산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공제

〈부록 표 7〉 금융재산 상속공제 공제요건 및 공제액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 상속공제
2,000만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2,000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 20%
10억원 초과	2억원

자료: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검색일자: 2023. 3. 6.

-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다음 요건을 갖춘 동거주택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주택가액44)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

〈부록 표 8〉 동거주택 공제요건

구분	내용
동거주택 공제	①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③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에 소유할 것 * 피상속인의 일시적 2주택, 혼인 합가, 등록문화재 주택, 이농·귀농 주택, 직계 존속 동거방양한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④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자료: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검색일자: 2023. 3. 6.

- (공제 적용의 한도) 상속공제한도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①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②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③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45)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부록 표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제18조(기초공제),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배우자 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 공제,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및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
-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검색일자: 2023. 3.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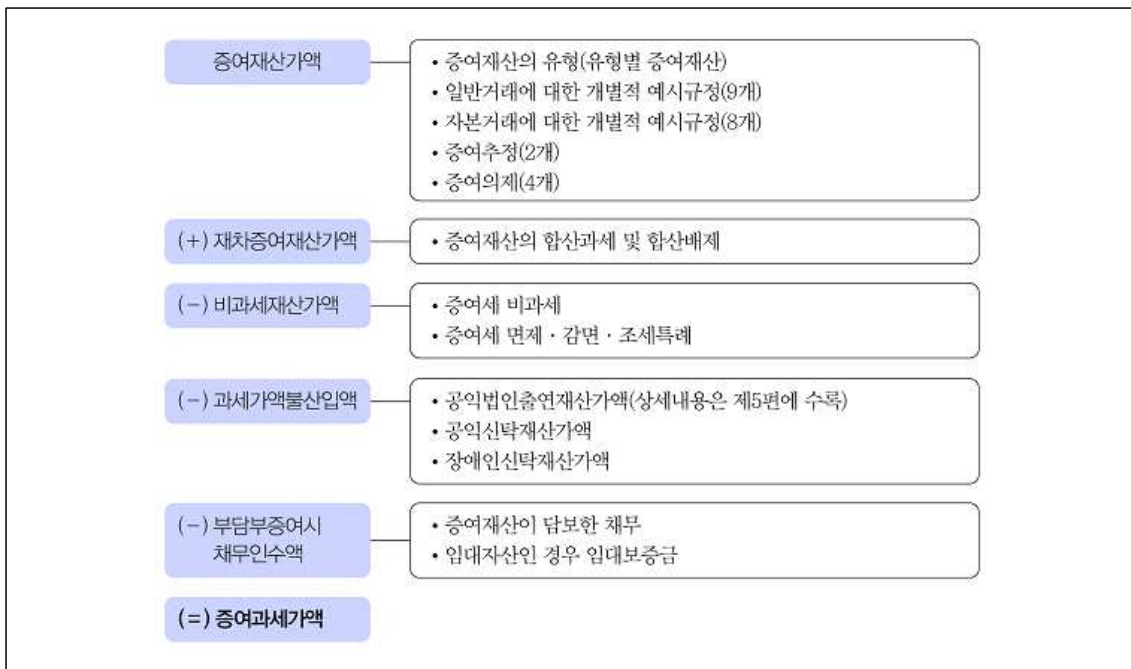
44) 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

45)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초과 시 적용, 증여재산공제액과 재해손실공제액은 차감하여 계산하며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은 포함하지 않음

나. 증여세 과세가액⁴⁶⁾ 및 과세표준⁴⁷⁾

- 증여세 과세가액이란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할 증여재산의 가액
-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수증재산 중 비과세되는 증여재산가액을 제외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해당 증여일 전 10년⁴⁸⁾ 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이를 합산하고, 재산을 증여받음에 있어 그 수증재산으로 부담해야 할 채무를 함께 인수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계산함

[부록 그림 2]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자료: 텍스넷, http://www.taxnet.co.kr/sub/law/window/tax_jo_haesul.asp, 검색일자: 2023. 3. 7.

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제1항

48)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는 5년

<부록 표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증여 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제1항제3호,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제2호·제3호,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특수관계법인과외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검색일자: 2023. 3. 6.

-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
 - 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제45조의2):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 ② 특수관계법인과외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45조의3) 또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45조의4): 증여의제이익
 - ③ ① 및 ②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한 금액
 - ④ ①부터 ③까지 외의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제47조제1항)에서 증여재산공제액(제53조)과 재해손실공제액(제54조)을 뺀 금액

-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 시 증여세 과세가액 등에서 빼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데 드는 수수료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시행령 제20조의3)

-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증여세 납부목적용으로 한정함)
- ② 시행령 제49조의 2 제9항에 따른 평가수수료⁴⁹⁾
- ③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유형재산 평가에 대한 감정수수료⁵⁰⁾

<부록 표 11> 증여세 과세표준

구분		증여세 과세표준
일반적인 증여재산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증여의제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명의신탁재산가액 - 감정평가수수료
	특수관계법인과 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과 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가액 - 감정평가수수료
합산배제 증여재산		합산배제증여 재산가액 - 3천만원 - 감정평가수수료

자료: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검색일자: 2023. 3. 6.

49)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⑨ 평가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6조 제2항에 따른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거나 심의에 앞서 관계인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른 평가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50)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 ②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
 - 가. 서화·전적
 - 나. 도자기·토기·철물
 - 다. 목공예·민속장신구
 - 라. 선사유물
 - 마. 석공예
 - 바. 기타 골동품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미술품
 3.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및 이 영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부록 표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검색일자: 2023. 3. 6.

<부록 표 13> 상속세 세액계산흐름도

총상속재산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속재산가액 :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래의 상속재산(사망 또는 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과세 재산: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문화재 등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사전증여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단,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창업자금, 기업승계주식 등은 기한 없이 합산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 공제의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가업·영농상속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 <th>1억원 이하</th> <th>5억원 이하</th> <th>10억원 이하</th> <th>30억원 이하</th> <th>30억원 초과</th> </tr> </thead> <tbody> <tr> <td>세율</td> <td>10%</td> <td>20%</td> <td>30%</td> <td>40%</td> <td>50%</td> </tr> <tr> <td>누진공제액</td> <td>없음</td> <td>1천만원</td> <td>6천만원</td> <td>1억 6천만원</td> <td>4억 6천만원</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 상속세 산출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 (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증여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 분납·연부연납·몰납																			
(=) 자진납부할 상속세액																			

자료: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검색일자: 2023. 3. 7.

<부록 표 14> 증여세 세액계산흐름도

증여재산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채무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 등) 																		
(+) 증여재산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 - 동일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공제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재산공제)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임 <table border="1"> <thead> <tr> <th>증여자</th> <th>배우자</th> <th>직계존속</th> <th>직계비속</th> <th>기타친족</th> <th>기타</th> </tr> </thead> <tbody> <tr> <td>공제한도</td> <td>6억원</td> <td>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td> <td>5천만원</td> <td>1천만원</td> <td>없음</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손실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기타	공제한도	6억원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없음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기타														
공제한도	6억원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없음														
(-) 감정평가수수료																			
(=) 증여세 과세표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유형 이외의 증여: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명의신탁: 신탁재산 - 감정평가수수료 • 합산배제(상증법 §45의2나지 §45의4 제외): 증여재산 - 3천만원 - 감정평가수수료 																		
(×) 세율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 <th>1억원 이하</th> <th>5억원 이하</th> <th>10억원 이하</th> <th>30억원 이하</th> <th>30억원 초과</th> </tr> </thead> <tbody> <tr> <td>세율</td> <td>10%</td> <td>20%</td> <td>30%</td> <td>40%</td> <td>50%</td> </tr> <tr> <td>누진공제액</td> <td>없음</td> <td>1천만원</td> <td>6천만원</td> <td>1억 6천만원</td> <td>4억 6천만원</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 증여세 산출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 (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세액공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그 밖의 공제·감면세액 																		
(+)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 분납·연부연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납 불가 																		
(=) 자진납부할 증여세액																			

자료: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검색일자: 2023. 3. 7.

□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결정세액, 신고세액공제 규모, 결정세액 대비 신고세액공제 규모 및 추이는 다음과 같음

○ 과세표준 구간은 세율이 변화하는 구간과 동일하게 설정함

-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부록 표 15> 과세표준 구간별 상속세 결정세액 및 신고세액공제 규모

(단위: 억원)

과세표준 구간	결정세액						신고세액공제 규모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억원 이하	45	33	46	46	70	83	2	3	3	2	2	2
5억원 이하	865	839	1,046	1,151	1,473	1,765	60	64	62	49	45	47
10억원 이하	1,413	1,476	1,867	2,078	2,404	3,406	110	122	126	100	78	91
30억원 이하	4,006	4,683	4,968	6,070	6,671	9,059	344	423	360	314	235	261
30억원 초과	17,111	17,715	15,740	17,997	31,405	34,168	1,562	1,730	1,174	1,013	1,192	876
경정	-878	-448	1,530	367	271	650	4	5	32	-28	-39	-1
합계	22,561	24,299	25,197	27,709	42,294	49,131	2,081	2,347	1,755	1,449	1,513	1,276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부록 표 16> 과세표준 구간별 상속세 결정세액 대비 신고세액공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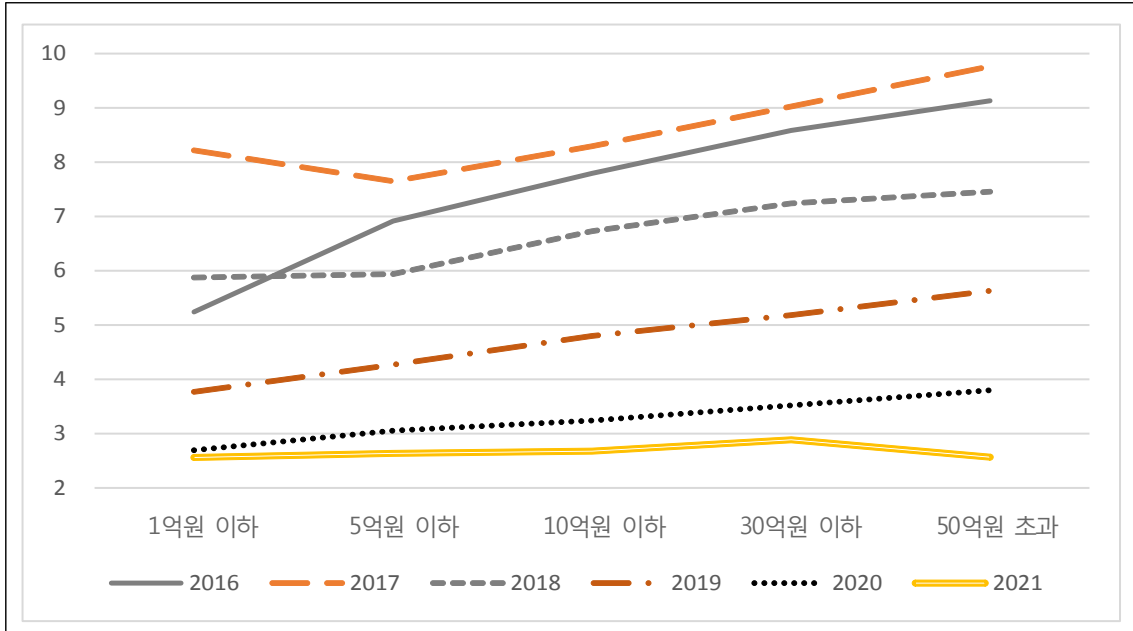
(단위: %)

과세표준 구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억원 이하	5.2	8.2	5.9	3.8	2.7	2.6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6.9	7.6	5.9	4.3	3.1	2.6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7.8	8.3	6.7	4.8	3.2	2.7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8.6	9.0	7.2	5.2	3.5	2.9
30억원 초과	9.1	9.8	7.5	5.6	3.8	2.6
경정	-0.4	-1.2	2.1	-7.8	-14.4	-0.2
합계	9.2	9.7	7.0	5.2	3.6	2.6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록 그림 3] 과세표준 구간별 상속세 결정세액 대비 신고세액공제 규모 추이

(단위: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록 표 17> 과세표준 구간별 증여세 결정세액 및 신고세액공제 규모

(단위: 억원)

과세표준 구간	결정세액						신고세액공제 규모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억원 이하	135	142	150	158	168	222	10	10	7	5	4	5
5억원 이하	2,590	2,994	3,488	3,829	4,291	6,373	209	226	176	129	108	168
10억원 이하	4,253	5,203	6,375	6,804	7,099	11,969	307	371	310	220	170	311
30억원 이하	8,875	11,802	13,362	14,226	15,154	29,392	652	912	719	515	399	817
30억원 초과	19,373	28,349	29,879	30,548	29,432	42,239	1,077	1,945	1,587	1,079	816	1,142
경정	57	-897	-79	55	183	-480	-1	-13	-12	-7	-4	25
합계	35,282	47,595	53,176	55,620	56,326	89,715	2,254	3,452	2,786	1,941	1,494	2,469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부록 표 18> 과세표준 구간별 증여세 결정세액 대비 신고세액공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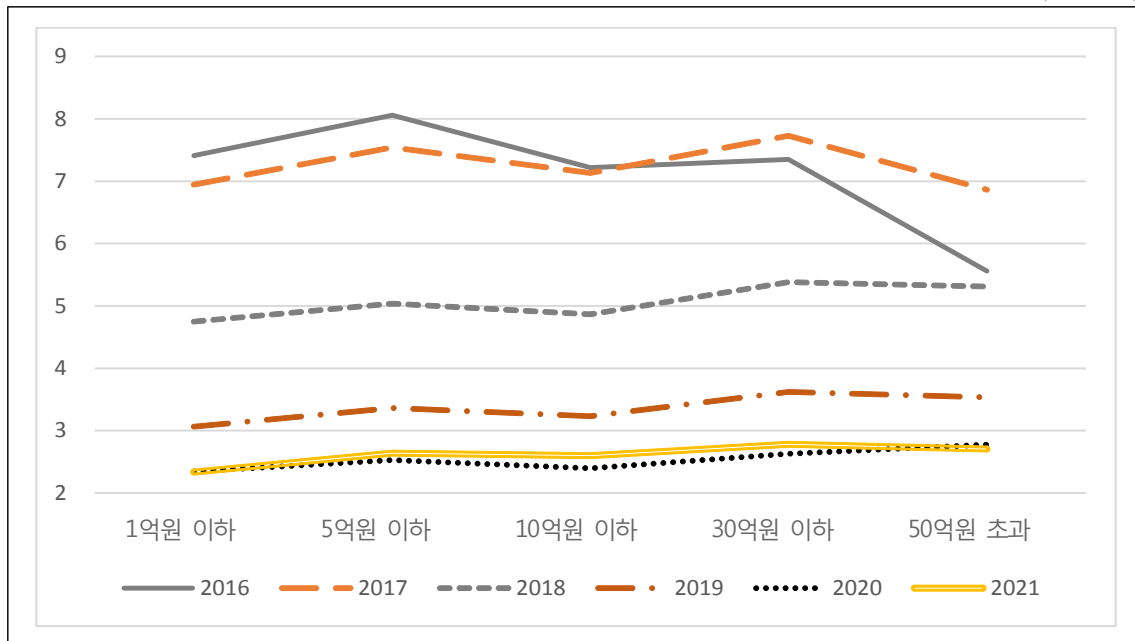
(단위: %)

과세표준 구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억원 이하	7.4	6.9	4.7	3.1	2.3	2.3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8.1	7.5	5.0	3.4	2.5	2.6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7.2	7.1	4.9	3.2	2.4	2.6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7.4	7.7	5.4	3.6	2.6	2.8
30억원 초과	5.6	6.9	5.3	3.5	2.8	2.7
경정	-1.3	1.4	15.6	-12.9	-2.0	-5.2
합계	6.4	7.3	5.2	3.5	2.7	2.8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록 그림 4] 과세표준 구간별 증여세 결정세액 대비 신고세액공제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록 표 19> 과세표준 구간별 상속·증여세 결정세액 및 신고세액공제 비중

(단위: 억원)

과세표준 구간	결정세액						신고세액공제 규모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억원 이하	180	176	196	204	238	305	12	13	10	7	6	7
5억원 이하	3,455	3,833	4,534	4,980	5,763	8,138	268	290	238	178	153	215
10억원 이하	5,666	6,680	8,242	8,882	9,503	15,375	417	494	436	320	248	402
30억원 이하	12,881	16,486	18,330	20,296	21,825	38,451	996	1,335	1,079	829	634	1,078
30억원 초과	36,483	46,064	45,619	48,544	60,836	76,407	2,638	3,675	2,760	2,092	2,009	2,018
경정	-821	-1,345	1,451	422	455	170	3	-7	19	-36	-43	24
합계	57,843	71,894	78,372	83,329	98,620	138,846	4,336	5,799	4,542	3,390	3,007	3,745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부록 표 20> 과세표준 구간별 상속·증여세 결정세액 대비 신고세액공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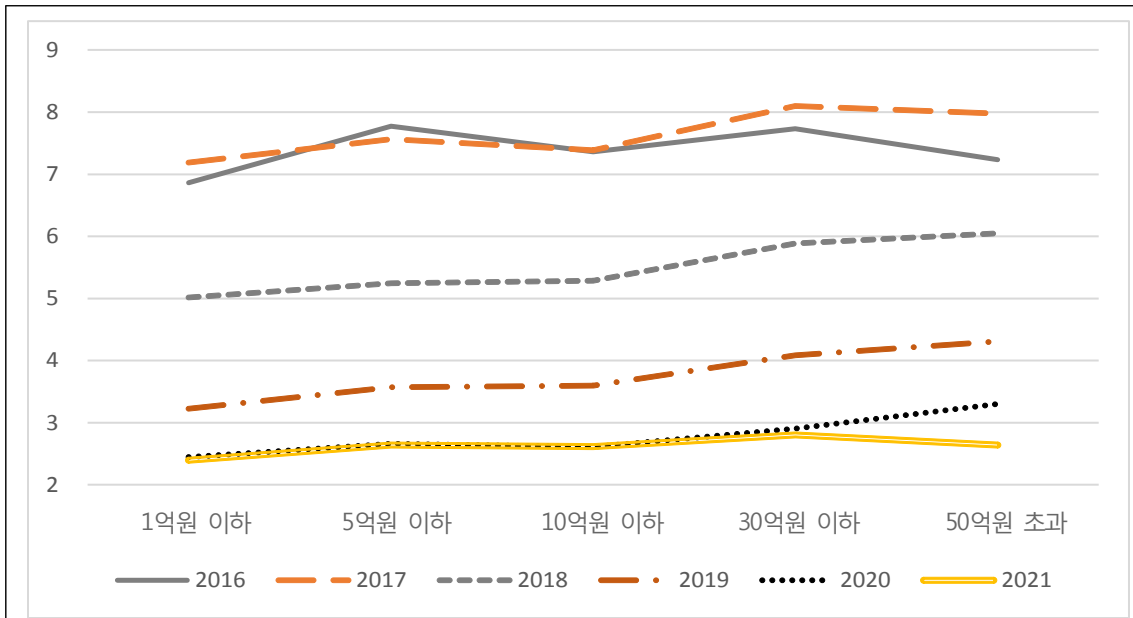
(단위: %)

과세표준 구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억원 이하	6.9	7.2	5.0	3.2	2.4	2.4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7.8	7.6	5.2	3.6	2.7	2.6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7.4	7.4	5.3	3.6	2.6	2.6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7.7	8.1	5.9	4.1	2.9	2.8
30억원 초과	7.2	8.0	6.1	4.3	3.3	2.6
경정	-0.4	0.6	1.3	-8.4	-9.4	13.9
합계	7.5	8.1	5.8	4.1	3.0	2.7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록 그림 5] 과세표준 구간별 상속·증여세 결정세액 대비 신고세액공제 규모 추이

(단위: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